



# 2026년 제1회 국토교통R&D 연구자 워크숍

- ◆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09:30 ~ 18:00
- ◆ 장소 :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점 루비홀(3층)



# 목 차

1. IRIS 조문해석으로 본 가연구개발혁신법 ..... 1
2. 통합 EZbaro 시스템 사용자 교육 ..... 37



Part 1

**IRIS 조문해석으로 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IRIS 조문해석으로 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동회계법인 위탁정산본부  
최정길 본부장

 정동회계법인

IRIS 조문해석

## 공통계상기준 (연구비카드)

 정동회계법인  
JUNG DONG ACCOUNTING CORP.

 질문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IRIS 답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이 필요함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5항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로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질문**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한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에서 "연구공간"의 의미는 ?

**IRIS 답변**

- "연구공간"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용성 사무공간은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추가적인 연구공간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함**



**관련 규정**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질문**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IRIS 답변**

- 두 기관이 출자 관계에 있거나 두 기관의 대표자 또는 최대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6호는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함



**관련 규정**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예시)〉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 ※ 가족 관계(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경우 형제자매)
-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 인력, 자금, 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질문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은하는 조문에서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지 문의? **A 비영리기관이 연구기관이며 같은 계열사의 B 기관에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 경우 정기적 비용이 발생하여 같은 계열사간의 거래로 보여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문의?**

 IRIS 답변

- 문의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4항 제6호 조문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주체가 영리기관일 경우에 해당 영리기관과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리기관의 내부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과제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은 적용하지 않으며, 비영리기관의 계열사 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의하신 상황에서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였다면 동 조문을 근거로 연구비 사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예시)〉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 가족 관계(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경우 형제자매)
-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 인력, 자금, 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질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의 의미는?

 IRIS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유사 또는 동일한 용도로 연구개발기관의 다른 사업 등(그 외의 경우)의 추진에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 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임
- \* 부적절 사례 예시: 대학에서 교비회계에 적용되는 회의비 식비 기준이 ‘2만원 /1식,1인’ 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3만원/1식,1인’ 인 경우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3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계상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 질문

내부거래 중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무엇이 있는지?

## IRIS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의 취지는 연구개발비 사용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구개발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이익 추구 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내부거래로 인한 연구개발비 사용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폭넓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계열사 등이 **단독 판매처인 경우** 외에도 **보안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외부에서 동등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납기가 불확실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음

## 질문

### 1. 관련 규정

혁신법 매뉴얼(179P)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부거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거래 예외로 인정된다. 이때 연구시설 장비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 부서 외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 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한다."

### 2. 질의

연구 현장에서는 동물을 활용한 실험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소속 기관 내 동물실(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동물실 사용료에 대해 계상 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실은 장비가 아닌 시설에 해당하므로 ZEUS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물실 사용료를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ZEUS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내부거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연구시설 장비비로 계상이 어렵다면, 동물실 사용료를 '연구활동비(수수료)' 또는 '연구재료비' 등 다른 적절한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 1)에서 규정한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란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동물실험시설이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 1)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시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 1)은 공통계상기준으로서 비록(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등)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연구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감안하여 202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영리기관이 비R&D 재원(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 등)으로 구축하여 ZEUS에 등록하지 아니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 1)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연구시설 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징벌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3조를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1.1.부터는 혁신법 매뉴얼(‘25.4.) p.179에 안내된 바와 같이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내부거래의 예외로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동물실 사용료가 높고 고시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 4)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에 해당하면 내부거래 예외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혁신법 매뉴얼(‘25.4.) p.183 Q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인정 절차에 대한 사항은 과세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실험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계상률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IRIS에 입력된 인건비 계상률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월별 인건비 계상률이 상이한 경우 최종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변경한 인건비 계상률로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 IRIS 답변

최종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월별 인건비계상률이 IRIS에 입력된 인건비계상률과 상이할 경우에는 IRIS에 입력된 인건비계상률을 협약변경(통보사항)절차를 통해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

## 질문

혁신법상 인건비 계상률 입력주기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계상률이 매달 변경되어도 아이리스에 매번 입력하지 않고,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변경사항 다 반영하여) 입력하면 된다는 건가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하면 이미 지급되었던 인건비의 계상률 변경사항도 RCMS 상에 다 반영이 되는건가요?

## IRIS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입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인건비계상률의 경우 최종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면 되며, 연중 변동 시점마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소관전문기관마다 처리하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소관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질문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사용불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중 마지막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 해당월에 기관에서 지급하게 되는 인건비는 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계상률이 0%가 되는데 계상률이 0% 일 경우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IRIS 답변

R&D신문고를 통해 R&D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인건비계상률이 0%가 되는 경우 해당 과제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급여와 연동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참여연구자의 급여를 과제에서 0% 계상하였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혁신법 매뉴얼('24.4.) p.180 Q1.에서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임을 안내한 것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부담하여야 할 참여연구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예외적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인건비계상률이 0%이지만 해당 과제에서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협약 체결 당시 인건비 계상률을 100%로 산정하고, **과제 중간에 0% 또는 5%수 변경하여도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① 협약 당시 인건비 계상률이 100%였으나, 과제수행도중 인건비 계상률이 100미만으로 변경되어도 협약 당시 100%으로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여부?
  - ② 협약당시가 아닌 과제수행도중(2년차~과제종료 까지)에 참여한 인원으로 과제에 처음 참여한 시점(2년차)의 계상률로 계상이 가능한지?
- EX) 2년차 처음 참여시점 100% → 과제종료 당시 10%여도 100%로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가능 여부?



## IRIS 답변

혁신법 매뉴얼('24.4.) p.180 Q1.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규모는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해당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더라도 그 인건비계상률에 비례하여 그 규모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내용과 같이 협약당시 또는 과제에 처음 참여한 시점 기준의 인건비계상률과 달리 **과제 수행 중에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어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혁신법 매뉴얼('24.4.) p.180 Q1.에 안내된 바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을 0%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급비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해당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더라도 그 인건비계상률에 비례하여 그 규모를 책정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질문**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4항1호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경되는 신규인력으로 인정되는 채용시기가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채용일~공고일기간이 6개월 이내인"2021.06.28~2021.12.28"에 포함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선생님의 질의는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1.06.28.~2021.12.28.)에 채용된 연구자를 현시점에 신규인력으로 배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1호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질문**

외부인건비 인건비 계상률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A대학 소속에 고용계약되어있는 연구원(가칭: 홍길동)이 B대학 R&D 과제에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 계상률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1. 원소속 기관(A대학)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월 400만원(근로계약 체결),  
 2. 타소속 기관(B대학)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월 200만원(근로계약x, 기타소득) 일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정시 분모값의 급여액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하는것인지?  
 1)600만원(근로소득 400만원 + 기타소득 200만원)  
 2)400만원(근로소득 400만원)

**IRIS 답변**

근로계약 외로 참여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승인받아 수행하는 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받는 인건비(외부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급여총액에 해당 인건비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인건비계상률의 분모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600만원입니다.**



**관련 규정**

Q12. 참여연구자가 복수의 근로계약(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참여연구자가 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에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연구자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중, 제 48조 (대학인건비 사용 기준) 4항 3조에 따른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인력분들께서는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초빙교수 직책, 비전임)' 과 '영리 기관 (원 소속 기관)' 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을 받고 있는 겸직 상태의 인원입니다.

(문의1)

본 인원들의 인건비의 경우, ' 대학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A%' , ' 영리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100-A%' 와 같이 나눠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양 기관 모두 등록) 또한, 영리기관에서 받는 통상 임금의 경우, 1일 8시간 및 주 24시간 (3일) 로써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본 인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 및 승인성 변경 필요 시의 변경을 통한 계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문의1 관련) 영리기관이 전문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명시된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일부만 지급받고 겸직 승인을 받아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질문**

(문의2,3)

(모든 문의 내용은 제48조 4항 3조가 있을지라도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영리기관이 전문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2. 영리기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3. 원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황이 아닌 것을 증명할 경우 (예시: 원 소속기관 50% / 산학협력단 50% 인건비 지급 문서 등)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IRIS 답변**

(문의2,3 관련)

고시 제48조제4항제3호의 취지는 혁신법 매뉴얼(25.4.) p.194 Q9에 안내한 바에 따라 **원 소속 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참여 연구자가 겸직 형태로 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비상근 근무나 급여를 일부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영리기관과의 근로 계약에 따라 과제에 참여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 ④의 3항의 규정해석 요청드립니다.  
 질의드린 규정에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해당규정에 따르면 해당 참여인력이 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영리기관 소속임이 확인되  
 는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뜻인지 영리기관 소속임에도 해당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는 현금으로 인  
 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먼저 연구비 사용 기준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로 소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법 매뉴얼 ('25.4.) p.191 인건비 관련 증  
 명자료 내용 참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제4항제3호의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현금 인건비 계상 제한은 해당 연구  
 자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혁신법 매뉴얼 ('25.4.) p.194 Q9 참고)  
 따라서, 원 소속 영리기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현금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과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질문**

대학(A) 소속 학생이 휴학하여 창업을 하고 영리기관(B) 대표가 된 경우에,  
 1. A 대학의 연구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기관확인서 제출)  
 2. 해당 과제에 참여 가능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문의1 관련)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형태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리기관 소속 외부참  
 여연구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2 관련)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  
 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인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인정을 출연기관장의 인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 인건비 (외부인건비 미지급 참여 여부)

### 질문

혁신법 매뉴얼 상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으로 매뉴얼 상 확인했습니다.**

타 영리기관 소속 직원을 현금으로도 현물로도 계상 불가할 경우, **참여 자체가 안되는것인지** 이미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100%받고있으니 **인건비계상을 0%로 미지급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IRIS 답변

문의하신 상황과 같이 현금 또는 현물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건비계상을 0% 또는 미지급인건비 계상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만을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의 차이)

### 질문

다름이 아니라, 기반구축사업의 **재료비로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구입하려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오실로스코프는 가속도센서와 같은 센서의 파형을 사용하기 위한 부대장치이고 가격은 약 4~6백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는 절삭 가공 특성 추출을 위해 동작기계에 가속도센서를 붙이고, 그 센서의 파형 분석을 위해 오실로스코프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와 같은 **오실로스코프는 재료비로 구매하는것이 맞는지, 연구시설장비비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IRIS 답변

문의하신 장치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의1]에 따른 연구장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부대장비\***라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장비란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 관련 규정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

구분	포함대상	제외대상
연구시설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검역시설(나노랩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 과학정보관리시스템생물사육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 빅데이터센터 등) - 전극/극판시설(가상전극시설, 전문극판센터 등)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운수 연구동(실업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술사, 식당) 등
연구장비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부압, 절열, 무함,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향, 중력 등)조성형 장비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사·생활용품, 청소기, 사무용 가구, 캐비닛, 전선, 테일, 전선용품 등)

#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의 차이)

## 질문

현재 IITP 과제의 전년도 연구시설/장비비의 금액으로 SSD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1. 현재 이월금은 연구시설/장비비로 남아 있으며, 구매 물품은 SSD입니다. 연구시설/장비비의 경우 부대장비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 또한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고 있어서 작년에는 SSD/CPU/GPU 구매 시 재료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 전년도 이월금에 연구시설/장비비로 재료비 성격으로 보았던 SSD에 대한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세세목 구분 문의
  - SSD/GPU/CPU 등 구매시 사용 중인 서버에 고도화 작업 목적으로 재료비로 보았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의 구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시설/장비비란 부대비용까지 보기에 어느 비목에 맞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 IRIS 답변

○ 답변1)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정의)제1호 [별표 1의1]에 따라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뜻합니다.

구축하시려는 장비가 지침 [별표 1의1]에 따라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부대장비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제1호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 사용 가능합니다. 단, 3천만원 이상의 성능향상을 위한 부대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전문기관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축하시려는 장비가 주장비의 동일 성능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제3호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용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목, 세목 구분에 대한 사항은 정산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2) 주장비(서버)의 성능향상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목, 세목 구분에 대한 사항은 정산주체인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PU 구매시 처리 방법

## 질문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의 안내를 받아 전산 재료비로 GPU와 CPU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국가 과제에서 GPU/CPU는 전산 재료비로 사용하는 관례에 따라 사용하여서 이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회계법인에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 별표 1의1에 따라 부대장비는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추가적인 장치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GPU, CPU가 주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부대장비’에 해당하여 연구시설장비비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GPU, CPU가 장착되는 서버가 연구장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기관운영에 사용되는 범용성 전산장비에 해당한다면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 범용성 사무용기에 장착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클라우드 기반 GPU 구독/대여 서비스 정기 결제를 통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정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며,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세목을 활용하여 사업비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독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무형 GPU(연구재료 혹은 장비)를 대여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 연구활동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2)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IRIS 답변

문의하신 상황에서 GPU의 대여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 **연구활동비-클라우드 서비스활용비 용도로 사용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질문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 금액은 3천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여러 대 구매 또는 임차하여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 IRIS 답변

-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 관련 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 장비를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질문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협약변경(사전 승인) 대상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규정 상 3천만원의 명확한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구입 장비 1대(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당 구매금액을 의미하는지, 개당 단가 및 수량에 관계 없이 장비 구입 1회 당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장비 A 1대 구입가 3000만원 vs 장비 B 10대 구입가 3000만원

## IRIS 답변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호]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총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임차비용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됩니다.**

## 질문

연구개발기관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 장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옵션 장치(해당 장치 개별로는 동작이 불가함)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로 추가 구매하려는 경우, **추가 구매하는 장치를 개별장비로 간주하여 3천만원 이상 여부에 따른 장비 심의 대상 여부 판정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제2조(정의)제1호에서는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로 정의하고, 별표1의1에서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침 별표1의1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장비, 보조장치 그리고 부대장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개별로 동작이 불가능한 옵션 장치(보조장치)라고 하더라도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경우) 연구장비에 포함됩니다. 단, 표준지침에서는 제9조(심의대상)제1항제1호에서 심의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고,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의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심의대상에 제외됩니다.

종합하여, 단순 유지보수를 위한 교체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장치라고 하더라도 총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이 투입된다면 심의대상이므로 심의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질문

1. 하나의 연구장비를 A,B 두개의 연구 과제에 각각 구입가의 20%로 현물로 계상가능한지?(A과제:20%, B과제:20%)
2. A과제에서 하나의 연구 장비를 매년 구입가의 20%로 현물 계상이 가능한지?
3. A과제를 통해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를 B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 IRIS 답변

(문의1,2 관련) 하나의 연구장비를 여러 과제에 사용하는 경우 과제별, 연차별로 해당 연구장비 구입가의 20% 이내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 고시 제66조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3 관련) 먼저 현물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과제에서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하는 것은 고시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중복계상에 해당하여 계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서 A과제에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B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영리기관으로서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중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항목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목적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수리 및 유지보수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장비는 당사에서 기보유하고 있는 장비이나, 본 과제 연구비로 구입하거나 현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비로 계상된(구매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비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 IRIS 답변

과제에서 구입하거나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일지라도 해당과제의 성과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 제3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연구개발비-직접비-연구재료비 세목에 대해서, 연구개발 대상이 **소프트웨어인 플랫폼 개발의 경우**,  
 가. **분석 및 테스트의 목적으로** 타 기업의 유사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비용을 연구재료비로서 가용** 할 수 있을까요?  
 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재료비로서 가용 가능한 범위는 다음 중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1.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필요한 JIRA 등의 협업 툴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로서 가용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  
 2. 연구개발 대상(플랫폼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IaaS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를 연구활동비나,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로서 가용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 IRIS 답변

선생님의 질의는 연구개발 목적이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 연구재료비 항목으로** 타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필요한 협업 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 **소프트웨어 개발관리에 필요한 협업 툴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로서 **연구재료비로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는 연구활동비에 관련 세목이 있으므로 연구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항목 선택은 정산 주체인 과제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IRIS 답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지원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 관련 규정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질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에 따르면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출장비를 집행가능한데  
**간접비-연구지원인력비로 인건비를 받는 연구지원인력도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수행기관 : 영리기관)**

추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에는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과제 당 1명으로 제한하는데 혁신법 상 인원제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어 1명 이상의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지원인력비가 지출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조제2호에 따라 영리기관에서는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25조제14항제1호에 따라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기관에서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출연연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 A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B가 있습니다.

주관기관인 A과제에서는 B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과제에는 참여하지 않음)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고 싶어하는데,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속이라는 사유로 연구비 집행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출연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1조제1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와 출연연 내 동일부서에 속하지 않은 자(최소단위부서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출연연 내에 속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한 조문을 바탕으로 혁신법 매뉴얼('24.4.) p.204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참여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포함)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영리기관 소속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1. '대학의 경우 연구실'을 최소단위 부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직제 상 최소단위 부서는 학과(전공) 또는 연구소입니다. 이런 경우 혁신법에 따라 최소단위 부서를 연구실로 봐야할지 아니면 학교의 직제상 최소 단위인 학과(전공) 또는 연구소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2. 최소단위를 학과(전공) 또는 연구소로 본다고 하면 A학과 교수님들과 동시에 B연구소 소속으로 연구소 사업을 수행 중이라면, A학과 타 교수님들은 전문가 활용을 할 수 없을까요?
3. 저희학교는 최소단위로서 학과(전공), 연구소, 자유교양 대학이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자유교양대학의 경우 교수님 10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더이상의 최소단위로 분류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 자유교양대학 소속의 참여연구자가 있으면 자유교양대학 모든 교수님들을 전문가활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건가요?

##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p.169~170)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대학의 경우에는 최소단위 부서를 직제가 아닌 연구실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학과 내 복수의 연구실이 있다면 A학과 교수님은 A학과의 타 연구실 소속이 교수님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자유교양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소와 자유교양대학을 최소단위로 보아 같은 소속 내 교수님들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 [현재상황]

1. 주관기관A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써, K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연구자는 a와 b임.
2. 참여연구자인 b는 외부참여인력이며, B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소속임.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하지 않는 외부기관 소속임)
3. 주관기관A병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였음.
4. 전문가활용비를 지급 받은 사람은 B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소속인 c임.

### [질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 위의 상황에서 K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인 b와 동일한 부서에 속한 c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②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A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연구자 b가 소속된 B대학교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 IRIS 답변

여기서 말하는 참여연구자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합니다.

질의하신 ① 사안에서는 참여연구자인 b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참여한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이므로, b가 소속된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도 제41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와 동일한 부서에 속한 C에 대해서는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②에 대해서는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그 타기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b가 속한 B대학교도 포함됩니다.

**질문**

현재 연구회과제를 수행중이며,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상실험을 진행예정입니다.  
임상실험 피험자에 대한 피험비 지급이 발생할 예정인데,  
**임상실험 피험비가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임상실험 피험자의 일부를 기관 내부 다른 부서 소속이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임상실험 피험비**는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해소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때 임상실험 피험비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면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피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제한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직접비'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물 및 기관부담금은 직접비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 1) 직접비 = 총연구비-간접비
  - 2) 직접비 = 총연구비-간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상기 두가지 해석 중 어떤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의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기준 적용 관련 '직접비'는 문의 내용의 '1)(총연구비-간접비)'과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5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질문**

최근 신규 공고문에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선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중인 사업 공고문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어 기술도입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 질의1) 수행중인 사업에 기술도입비를 현금으로 계상해도 되는지?
  - 질의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제 68조 1항을 보면 현물의 경우만 나와 있는데 현금에 대한 별도 규정 내용은 없는지?
  - 질의2) 현금으로 계상 시 총 연구개발비의 몇 %까지 계상해도 되는지?
  - 질의3) 본 사업으로 기술도입비를 집행 후 해당 외부기술을 또 다른 당사 내부 사업, 타 과제 등에 적용해도 되는지?
- \*질의1, 1-1 요지: 협약 당시 기술도입비 계상을 하지 않았으나 전담기관 승인 없이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집행가능 여부

**IRIS 답변**

(질의 1) **기술도입비는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8조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계상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질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포함)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시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도입비 집행 후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하는 것은 동 고시 제21조제4항제3호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상이 불가합니다.**

(결재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

- 결재문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
-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승인의 범위: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한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기안을 완료하면 되며, 결재문서가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기안자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연구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므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함**)

-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
- 수기 결재문서의 허용 여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결재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단, 수기 결재문서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은 소관 전문기관에서 판단

(결재 시점)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 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전까지 완료

(실제 회의내용의 반영) 실제 회의가 사전 결재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첨부되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다과 포함 여부)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질문**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기준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한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사전결재 시점은 '회의 시작 시점' 또는 '실제 사용시점' 중 늦은시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완료된 기안이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것으로 인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연구책임자가 기안하는 시점만 충족한다면, 사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도 사전결재의 시점을 충족한다고 봐도 될까요?

EX) 2월 10일 13시 회의일정 - 연구책임자 회의 사전결재 2월 10일 09시 기안 - 사전결재 2월 12일 결재완료

위 사례의 경우 항상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사전결재 기안 시점이 충족한 경우, 사후결재 완료가 1일, 2일뒤..... 언제까지 결재가 완료되어야 되는것 인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IRIS 답변**

과기정통부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안내사항(24.11.13.) 이후 최종적으로 안내된 사항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사전 내부결재 문서의 기안을 완료하면 되으며, 결재문서가 회의비 중 식비 사용 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사후 결재의 기한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안자가 반드시 연구책임자 일 필요는 없으며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이 기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므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IRIS 답변**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 질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IRIS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별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봄**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간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함**

※ 예)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가 회의를 하고 회의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과제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불가함.**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 A, 공동연구개발기관 B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이지만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이 모두 A기관이라면(B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소속이 A기관인 경우)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불가함

**Q14.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종료된 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기관 소속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비 중 식비는 본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이나 회의비 중 식비는 동일 기관 소속자 간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사유에 해당

**Q15.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위해 사전 내부결재 시 반드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에도 연구책임자를 결재경로에 포함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 받은 직무대행자(참여연구원 등)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경로에 연구책임자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내부결재에서 연구책임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직무대행자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내부결재 시에도 직무대행자의 결재로 갈음 가능

**Q17. 회의비 중 식비 세부 사용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안내 내용(과기정통부 공문 등)과 본 매뉴얼에 안내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 안내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본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고시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24.12.1.)부터 사용한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 적용됨

**Q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또는 기타 운영비 자원 등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회의비 중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 적용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원(간접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혁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에 기내식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5조 제7항의 '출장지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이동수단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단, 고시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의 식비와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부분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1항, 제4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질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의 출장 시, **주관기관 방문에 대한** 참여기관 연구원의 출장여비 계상 및 집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출장 시 해당 출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4) 단도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질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체규정에는 준비금(비자, 여행자보험 등)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데 연구자께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선택한다면 준비금을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IRIS 답변

선생님의 질의는 자체규정에는 없는 출장비 세부항목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장비 계상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선택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자체규정으로는 계상할 수 없는 항목이라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 관련 규정

- ②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음
- ※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질문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IRIS 답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으로서 이주비용, 체재비 등
-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질문

○ 연구개발과제번호: RS-2018-II180207  
 ○ 당해사업년차: 2024(2단계 3년차)  
 \* 2단계: 2022-01-01 ~ 2025-12-31  
 상기 과제 수행 관련하여 **소프트웨어활용비** 구독료를 1년 단위로 결제하고자 합니다.  
 \* **사용계약기간(1년): '24.12.09 ~ '25.12.08**  
 다만, '월' 단위(최소 단위) 구독료가 존재하여  
 이 경우 단계기간 내에서도 최소 단위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10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의 최소 단위 사용계약기간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1년 단위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계약기간이 과제 기간 내이므로 최소 계약단위인 월 단위로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연구실 운영비 사용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필요한데**,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구 그대로 연구실(개인 연구실 및 개인용도가 아닌)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요?**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10조 제7호의 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로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예시로 언급하신 **해당과제 과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1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질문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해 설계 및 해석용 PC를 구축하고자 할 때, 연구실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협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4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승인성 협약 변경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협약 신청하면 될까요?

## IRIS 답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사용용도로 사무용 기기(PC)를 구입할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6호에서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혁신법 매뉴얼(24.4.) p.205 참고)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 과제 소관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한 협약변경 후에 사무용기기(PC) 구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Q8.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 신설(추가) 및 변경 가능

##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제7호에 따라,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냉난방기 구매에 대해 이전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고 연구자 개인 연구실 등에서 과제와 무관하게 사용하기 위한 냉난방기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①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구 그대로 ② 연구실(개인 연구실 및 개인용도가 아닌)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

##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7호의 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로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예시로 언급하신 '①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와 관련하여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의 신규 연구 사무실 구축을 위한 정수기(임대료),청소기,냉장고,공기청정기,가습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초기 계획서 상의 품목엔 없던 물품이라 사업 협약변경 후 계획서에 품목을 추가하여 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이 세세하게 어떤 물품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RIS 답변**

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는 기기, 비품 등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정수기(임대료),청소기,냉장고,공기청정기,가습기 등의 물품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간접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11호 그 밖의 비용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공공요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많아 개별 장비에 별도 전기 계량기를 장착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전기사용료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과 유의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비영리 기관인 대학입니다.

**IRIS 답변**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장비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 전기 계량기를 장착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연구장비가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개별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력 사용량에 근거하여 직접 산출할 수 없다면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질문

연구 과제에서 구입한 장비가 아닌 학교에서 구입한 장비를 연구비로 수리하여 연구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장비 수리비를 제외한 장비 수리 시 필요한 부품만을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이나 재료비, 장비비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IRIS 답변

문의하신 연구장비가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제3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장비가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간접비 또는 자체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질문

파견근로자 활용비의 연구개발비 사용 항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위 <기존 질의 참고 요청> 관련 답변(2021.2.2 등록)에서 파견근로자의 파견대가는 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로서 연구지원비(중 기관공통비용)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서 "1.직접비 / 아.연구활동비 / 카)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사용 용도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복사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사용이 인정되는데**,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조 또는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인력을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도 위 연구활동비 사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연구활동비 항목에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용직 활용비와 파견근로자 활용비의 사용 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IRIS 답변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 가능한 비용은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불가능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조 또는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인력을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활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므로 간접비(연구지원비\_기관 공통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중 그 밖의 비용의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참여 연구자 또는 전문가 외의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참여하는 일반국민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위한 용도입니다.

##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⑥항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기준이 단계기준인지 당해연도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Q 2. 1단계 기간(2025~2026년, 1단계 기간은 2년) 중 2명이상이 참여한 경우이며 2025년과 2026년의 각각 연도별 연구수당 계상액은 동일함.

1명의 연구자가 2025년에는 당해연도 연구수당 계상액의 80%를 수령하고, 2026년에는 당해연도 연구수당 계상액의 40%를 수령 시

2025~2026년 2년 동안의 총 연구수당 계상액의 60%를 수령하는 것이 됨. 따라서, 이 경우에 2025년도에 80%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IRIS 답변

(Q1 관련) 혁신법은 단계정산이 원칙이므로 문의하신 연구비 고시 제26조제6항 또한 단계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2 관련) 단계 내 특정 연차에서 1명의 연구자가 해당 연차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단계 기준으로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시 제26조제6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질문

1. 최초 협약 당시 제출한 원래계획서상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도록 혁신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엔 해당 규정을 현금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 보전을 위하여 미지급 인건비 증액이 불가하도록 한 취지라고 이해하였으나, 다른 규정에서 미지급 인건비의 증액 등의 변경은 통보사항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보만으로 미지급 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2. 현금인건비 감액 후 미지급 인건비 증액을 통한 수정인건비 총액 보전(연구수당 보전 목적)

현금인건비 감액으로 인한 수정인건비 총액 보전을 위하여 미지급 인건비 증액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를 제재할 근거 또는 기준이 있는지요? 실무적으로 불인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수정인건비 보전을 위한 미지급인건비 증액인 경우로 가정하였을때, 연구수당을 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전 : 현금인건비 100만원 + 미지급인건비 100만원 → 연구수당 40만원  
변경후 : 현금인건비 10만원 + 미지급인건비 190만원 → 연구수당 40만원

3. 원래계획에 미계상된 미지급 인건비 증액

**최초 협약 당시 제출한 원래계획서상 미지급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미지급 인건비를 증액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미지급인건비의 취지와 협약변경(통보절차)을 통해 미지급 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1) 미지급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의 연구수당계상을 위한 기준금액인 수정인건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연구수당 계상액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지급인건비는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고시 제 81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 정산 시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미지급인건비 계상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의 참여정도를 고려하여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3) 협약 당시의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승인 없이 협약변경(통보절차)을 통하여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 IRIS 답변

**질문**

1. 단계 기간 내 인건비 예산 변경은 없으나 실적행 인건비가 예산 대비 적게 집행하였다면 집행 가능한 연구수당(상한)은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인가요, 계상액(예산)의 20% 이내인가요?**  
ex) 직접비 집행률이 80% 초과했다는 가정 하에,  
인건비 예산액 10,000,000원  
인건비 집행액 6,000,000원  
연구수당 예산액 2,000,000원인 경우 집행 가능한 연구수당 상한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할 때, 분자·분모의 직접비에 '위탁연구개발비'도 포함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RCMS를 사용하는 과제는 주관기관의 직접비(예산)에 위탁연구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아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위탁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으나
- 2) 이지바로를 사용하는 과제는 주관기관의 직접비(예산)에 위탁연구개발비 포함되어 있음.

**IRIS 답변**

답변1) 직접비사용비율이 80%를 초과한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정산 시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이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인건비 집행액이 6,000,000원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연구수당은 인건비 집행액의 20%인 1,200,000원 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2) 연구수당 지급 한도와 관련한 **직접비사용비율의 계산시 직접비 모수에는 위탁연구개발비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접비사용비율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혁신법 매뉴얼('23.3.) p.206에 안내되어 있으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인건비계상률이 0%일 때(다른 재원으로 100% 인건비 받고 있는 경우), 미지급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즉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IRIS 답변**

총인건비계상률은 ①인건비계상률, ②학생인건비계상률, ③학생인건비지급률,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참여연구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및 미지급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참여연구자가 **인건비계상률 및 미지급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더라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연구수당 총액 내에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3.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4.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Q5.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1년부터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 시점을 말함)에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단계 시작 시점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되거나,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협약 변경)으로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협약변경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포함

**Q7.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Q8.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질문

혁신법 매뉴얼 제10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 40퍼센트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에서 연구개발과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연차별로도 맞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 이라고 적혀있는데, 공동연구개발비도 제외한다는 문구가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 IRIS 답변

(문의1 관련)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단계별 정산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또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단계 단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1항 또한 **단계기간(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전체기간)에 대해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의2 관련) 문의하시는 공동연구개발비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계상하는 연구개발비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별도로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문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위탁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이하 "과세") 처리함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면제(이하 "면세")가 되는 예외사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상 이외의 면세 적용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부처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이외의 모두 과세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수령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격에 따라 과세, 면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과기부의 해석을 질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에 따라 과세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은 등의 기관 특성을 가진다면 매뉴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일부 연구기관 및 위탁회계법인 등에서는 혁신법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주된 용역이 면세사업이므로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면세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혁신법이라는 범부처 공통 법령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혁신법 매뉴얼에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외사항 이외에는 적용을 허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존 과기부 질의, 답변을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첨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조세당국의 소관'으로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어 매뉴얼에 원칙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해 과기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관리함에 있어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이행용역 성격 등을 불문하고 모든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제사 원칙이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IRIS 답변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둘 수 없는 것이며, 혁신법 매뉴얼('22.3.) p.189의 내용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혁신법 매뉴얼('22.3.) p.189에 언급한 부가가치세 면세 예시 외에 부가가치세법 상 추가적인 면세 사유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구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세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약개발 주기에서의 임상단계 과제의 특수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의 성과활용지원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상 단계 과제에 대한 **기존 특허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과제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시행령 별표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신약 임상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특허는 기술적 차별화와 법적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 취득 특허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시작 이전에 기 출원·등록된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본 과제의 간접비·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간접비·성과활용비·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성과)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 시작 전 연구개발기관에서 출원·등록된 특허권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라면 해당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 시작 전에 기 출원·등록된 특허권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가 아니지만 **해당 특허권의 등록, 유지 비용이 과제 수행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이라면** 직접비·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025~2026년 적용할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개정되지 않았고, IRIS 시스템 상에도 비율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각종 과제 신청 및 협약 시 **2025년 비율이 아닌 2023~2024년 비율을 적용하여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되면,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협약변경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당초 입력한 **2023~2024년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23~2024년에 비해 2025~2026년 비율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제46조, 제63조에 따라 **간접비비율은 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혁신법 매뉴얼(2025.4월) 참고).



Part 2

## 통합 EZbaro 시스템 사용자 교육



# 통합 Ezbaro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시스템 편의기능 및 연구비관리 절차별 사용법 안내 -

20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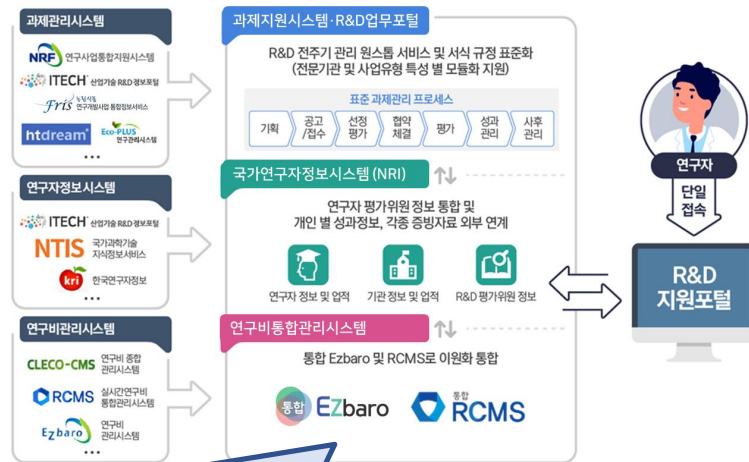
## CONTENTS

- 01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02 통합Ezbaro 사용법 - 협약
- 03 통합Ezbaro 사용법 - 집행
- 04 통합Ezbaro 사용법 - 정산
- 05 의견수렴 및 질의답변

# 01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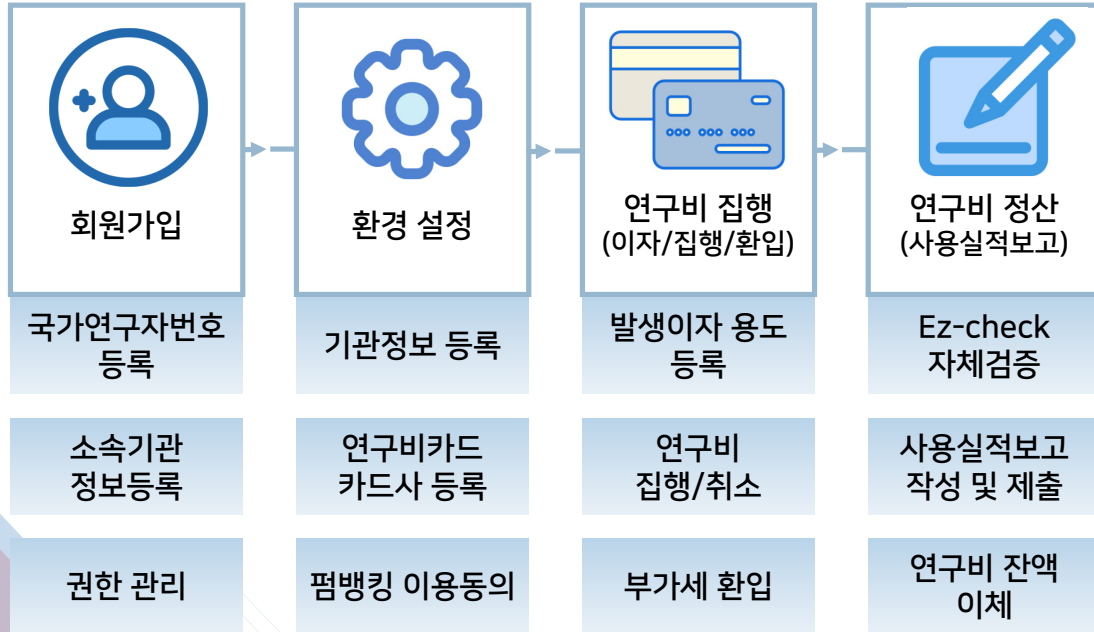
### ●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성도



-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운영한 정부R&D사업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Ezbaro와 통합RCMS로 통합 이원화한 시스템입니다.
- > 온라인 환경에서 연구비 카드 결제내역 관리와 연구비 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와 연구비 정산 관련 기능을 제공합니다.
- >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등이 있습니다.

#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 통합Ezbaro 사용순서



# 01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권한 관리 -

#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통합Ezbaro 사용자 권한

### 연구원(국가연구자번호)

연구 책임자	과제 조회, 협약정보변경/통보, 연구비 이체(지급유형-건별) 편뱅킹담당자 및 실무 담당자 지정 가능
참여 연구원	과제조회만 가능
실무 담당자	연구책임자가 지정 <b>(1명만 지정 가능)</b> * 건별 과제의 경우 편뱅킹을 제외한 책임자의 모든 권한 대행
편뱅킹 담당자	연구책임자가 지정 <b>(1명만 지정 가능)</b> 연구비 이체 관리(이체 실행 등)(지급유형-건별)

### 연구비관리 실무자(사업자등록번호)

기관(대표)관리자	초기화면에서 <b>소속기관의 법인공인인증서를 등록</b> 한 사용자 * 기관 관리자를 추가/삭제 가능하며 기관 관리자의 모든 권한을 가짐
회계감사부서장	소속기관 <b>모든 협약과제</b> 의 자체 회계감사 수행하는 사용자 * 기관대표관리자가 지정, 협약정보변경/통보, 집행 가능
기관 관리자	소속기관 <b>모든 협약과제</b> 의 관리 권한을 가짐 * 기관대표관리자가 지정, 협약정보변경/통보, 집행 가능
과제 관리자	<b>지정된 과제</b> 만 관리 권한을 가짐 * 기관관리자가 지정, 협약정보변경/통보, 집행 가능

\*최초 로그인 시, 국가연구자번호 입력 또는 법인공인인증서 인증

#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통합Ezbaro 사용자 권한별 업무수행범위

구분	연구원	연구책임자	기관(대표) 관리자	회계감사 부서장	실무담당자	편뱅킹담당자
협약정보	부분조회 (타인 정보X)	조회/수정	조회/수정	조회	조회	부분조회 (계좌정보)
집행내역	부분조회 (타인 정보X)	조회/수정/이체	조회/수정/이체	조회 (보완 및 검토)	조회	조회/수정/이체
정산내역	-	조회/수정	조회/수정	조회/부분수정 (사용실적보고)	부분조회 (상시점검)	-
기관정보	-	-	조회/수정	조회	-	-

\*참여연구원의 경우, 타 연구원의 인건비 관련 정보(계상률, 집행내역 등) 조회 불가

\*기관대표관리자만 기관정보 수정 가능, 수정 시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 통합Ezbaro 연구자번호 및 소속기관 정보관리

- ▶ 메뉴 : GAIA 홈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또는 초기 회원가입시 입력)
- ▶ 연구자번호의 경우, NRI 상에 등록된 국가연구자번호 조회 후 등록 가능

국가연구자번호
 연구자회원
국가연구자번호 변경

✓ 연구기관명

(제)한국연구재단

검색

미등록기관등록

✓ 연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

연구기관 우편번호

기관검색후 자동입력됩니다

연구기관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로

연구기관 상세주소

기관검색후 자동입력됩니다

## ● 소속기관의 사용자 권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 메뉴 : 연구개발기관 권한 관리
- ▶ 권한 관리 주체 : 기관대표관리자(정/부)
- ▶ 권한 종류 : 기관관리자, 과제관리자, 기관대표관리자&회계감사부서장, 회계감사부서장, 통합학생인건비 담당자 지정

시스템 > 연구개발기관 관리 > 연구개발기관 권한 관리

메뉴 열기 | 동영상

·사용자ID	·사용자	·기관대표	·관리자구분	·담당전문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관리자 목록 38 건							
상태	순번	사용자ID	사용자	기관대표 관리자 구분	담당전문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1			일반사용자			
	2			기관관리자			
	3			과제관리자			
	4			회계감사부서장			
	5			기관대표관리자 및 회계감사부서장			
	6			통합학생인건비 담당자			
	7			일반사용자			
	8			기관관리자			
	9			일반사용자			

- ※ 퇴사자,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 분장 변경 발생 시, 과제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권한 현행화 필요
- ※ 연구원 권한은 연구자번호 등록하는 경우 모두 부여 가능, 참여과제가 있는 경우만 과제정보 조회 가능

● 기관대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어디서 수정 가능한가요?



- ▶ 메뉴 : 기관정보변경
- ▶ 법인 공인인증서 인증 후, 인사 변경사항에 따른 기관대표관리자 변경 가능

● 여러 개의 권한 사용하는 경우 기본권한 설정 가능한가요?



- ▶ 메뉴 : 즐겨찾기 설정
- ▶ 2개 이상의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즐겨찾기 설정을 통해 접속 시 설정되는 기본권한 지정 가능

순번	권한명	권한설명	권한구분	기본권한설정
1	내부운영담당자	내부운영담당자	시스템운영	기본권한
2	외부운영담당자	상담원 및 부저관리자	상담원	설정
3	전문기관관리자	전문기관관리자	전문기관	설정
4	전문기관사업담당자	전문기관사업담당자	전문기관	설정
5	기관관리자	연구수행기관 관리자	연구수행기관	설정

# 01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 마이페이지 -

##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 마이페이지(1/2)

> 메뉴 : 마이페이지 > 단계별 과제 진행 현황

구분	단년도협약	다년도협약
수행중 과제	당해 연구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연차종료과제	-	당해연구기간 종료에 따른 집행내역 완료(연차사용내역마감) 대상 과제
단계종료과제	<u>단계(단년도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 종료에 따른</u> 사용실적보고 대상 과제	
최종종료과제	단계 연구기간 종료되고, 정산진행상태가 '정산확정'인 과제	

수행중과제	연차종료과제	단계종료과제	최종종료과제
7	33	8	1
D-day 일의 0건			
D-37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2025-05-01~2026-04-30	☆
D-98	다목적실용위성 6호 탑재체 개발사업	2022-01-01~2026-06-30	☆
D-251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2025-12-01~2026-11-30	☆
D-251	복합형 과기협력센터	2025-12-01~2026-11-30	☆
D-268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2025-12-18~2026-12-17	☆

# 통합Ezbaro 시스템 개요

## ● 마이페이지(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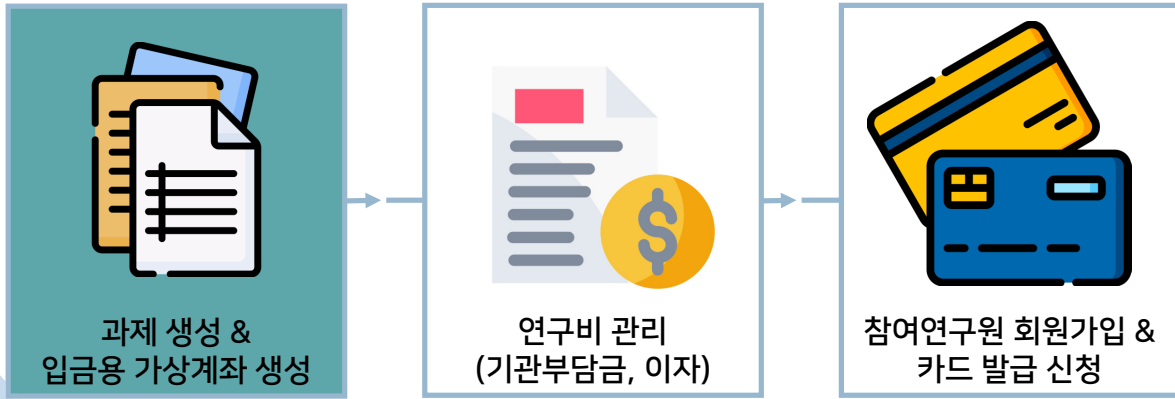
> 메뉴 : 마이페이지 > 단계별 과제 진행 현황

상태	D-day 표시 기준	D-day 임박 기준
● 수행중과제	당해년도종료일자 - 현재일	당해년도 종료일 30일 전 과제
● 연차종료과제	(당해년도종료일자+ 한달) - 현재일	당해년도 종료 후 집행내역 등록완료 미처리한 과제
● 단계종료과제	(다년도 종료일 + 3달) - 현재일	다년도 종료일 이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미완료한 과제
● 최종종료과제	-	-

## 02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과제정보 생성부터 연구비 지급까지



- \*협약체결, 연구비 지급계획 수립은 IRIS에서 수행
- \*기관 등록 및 연구비 지급유형 지정된 이후 과제 생성과 연구비관리 가상계좌 부여 가능 (연구비 지급유형 지정/관리: 한국연구재단 범부처연구비관리팀)

## ● 협약 ▶ 협약과제 ▶ 협약과제 상세(1/3)

- ▶ 과제정보/연구비정보/연구원정보/과제구성 현황
- ▶ 예산실적대비표/사용실적보고/정산확정 결과
- ▶ 단계변경이력(정산 반려, 반려사유 등 확인 가능)

▶ 자원 별 예산		사업담당자 정보			(단위:원)
재원구분	지분율	현금	현물	합계	
정부출연금	100	186,881,200	0	186,881,200	
민간부담금	0	0	0	0	
정부외출연금	0	0	0	0	
지방자치단체금	0	0	0	0	
합계	100	186,881,200	0	186,881,200	

▶ 비목별 예산		당초 연구개발비			(단위:원)
비목	세목	현금	현물	합계	
직접비	인건비	52,000,000	0	52,000,000	
	(일반)학생인건비	0	0	0	
	(특례)학생인건비	0	0	0	
	(일반)연구시설·장비비	0	0	0	
	(특례)연구시설·장비비	0	0	0	
	연구활동비	30,000,000	0	30,000,000	
	연구재료비	58,481,200	0	58,481,200	
	연구수당	10,400,000	0	10,400,000	
	위탁연구개발비	15,000,000	0	15,000,000	

\*자원별 예산 및 비목별 예산 조회 가능(IRIS 사용 과제는 최초 협약신규의 예산이 표시됨)

## ● 협약 ▶ 협약과제 ▶ 협약과제 상세(2/3)

- ▶ [참여연구원 정보]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조회
- ▶ 참여연구원별 월 인건비 계상률 정보 조회

▶ 참여연구원 목록 **사업담당자 정보**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역할구분	참여시작 일자	참여종료 일자	중인건비계상률	이메일	핸드폰	참여여부
	신대표	연구책임자	2024-01-01	2024-10-31	10			참여

▶ 참여/중단

▶ 연구원 월 인건비 계상률 \* 참여연구원 목록에서 대상자를 클릭하시면 연구원 월 인건비 계상률 조회가 가능 합니다.

성명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참여연구원 참여여부가 미사용(삭제) 연계되더라도 집행내역 있는 경우 참여여부-중단으로 표시됨

## ● 협약 ▶ 협약과제 ▶ 협약과제 상세(3/3)

- ▶ [과제구성 현황]단계 내 과제의 과제구성도 조회

▶ 단계내 과제 현황 2건

전문기관	연도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상태	수행기관	연구시작일자	연구종료일자
교육용전문기관	2023	202351	체험하기과제_세부2023	과제종료(당초한국기업_1		2023-01-01	2023-12-31
교육용전문기관	2024	202451	체험하기과제_세부2024	과제종료(당초한국기업_1		2024-01-01	2024-10-31

▶ 과제구성확인 3건

과제형태	전문기관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수행기관	연구비	과제상태
		체험하기과제_총괄2023	신대표	한국기업_1 (051,510,573,000		정산신청(전문
		체험하기과제_세부2023	신대표	한국기업_1 (05	680,000,000	정산신청(전문
		체험하기과제_위탁2023	신대표	한국기업_1 (05	72,000,000	정산신청(전문

\*단계 과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 동일 필요

## ● 변경 연구개발비를 조회하는 화면은?

- ▶ 메뉴 : 협약 > 연구계획변경 > 수정예산정보 변경
- ▶ 당초/변경 연구개발비(이월금 세목변경 사항 포함) 조회 (**변경은 IRIS**)

> 수정예산정보 T<sup>o</sup> 초기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등록된 과제의 협약변경(수정예산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메뉴를 통한 수정은 불가하며, IRIS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전년도이월액 반영 및 협약예산이 변경(세목 및 총액 변경) 되는 경우 수정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이월액-원금(B)'과 '수정예산-전년도이월액-원금(B\*)', '전년도이월액-원금(C)'과 '수정예산-전년도이월액-원금(C\*)', '협약예산-원금(D)'과 '수정예산-원금(D\*)', '협약예산-원금(E)'과 '수정예산-원금(E\*)'의 각 합계가 같아야 집행처리가 가능합니다.

※ '전년도이월액(F)-협약예산(F)' 합계와 '수정예산원금(I)-수정예산원금(I\*)'의 합계가 같아야 집행처리가 가능합니다.

※ 수정예산(I-I\*)의 합계는 결의금액원금(G)과 세목의 합계보다 작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부담비 항목 입력은 정부유연연구기관 가능합니다.

비목	세목	당초연구개발비			결의금액			전년도이월액(Z)		변경연구개발비		합계	예산잔액	예산총액
		원금(D)	원금(E)	소계 (F=D+E)	원금(G)	원금(H)	세액	원금(B*)	원금(C*)	원금(D*)	원금(E*)			
직접비	인건비	315,000,000	0	315,000,000	0	0	0	0	0	315,000,000	0	315,000,000	0	315,000
	(일반)확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례)확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례)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실행비	716,000,000	0	716,000,000	0	0	0	0	0	716,000,000	0	716,000,000	0	716,000
	연구재료비	31,000,000	0	31,000,000	0	0	0	0	0	31,000,000	0	31,000,000	0	31,000
	연구수당	0	0	0	0	0	0	0	0	0	0	0	0	0
	취직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책공용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개발부담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안수당	0	0	0	0	0	0	0	0	0	0	0	0	0
	육족상간첩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062,000,000	0	1,062,000,000	0	0	0	0	0	1,062,000,000	0	1,062,000,000	0	1,062,000
간접비	간접비	110,000,000	0	110,000,000	0	0	0	0	0	110,000,000	0	110,000,000	0	110,000
	소계	110,000,000	0	110,000,000	0	0	0	0	0	110,000,000	0	110,000,000	0	110,000
	합계	1,172,000,000	0	1,172,000,000	0	0	0	0	0	1,172,000,000	0	1,172,000,000	0	1,172,000

- \* (당초연구개발비) 협약용 계획서 기준의 항목별 연구비 편성내역 차년도 협약변경의 경우 당초연구개발비로 반영됨
- \* (변경연구개발비) 승인/통보성 협약변경 사항 반영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과제 생성부터 연구비 카드 발급까지



- \* 연구비 지급계획 수립은 IRIS에서 수행
- \* 건별 지급유형인 경우, 입금용 가상계좌로 오지급 처리된 건은 환수 요청 공문 필요 (경유: 한국연구재단 범부처연구비관리팀)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통합Ezbaro 연구비관리 가상계좌

- ▶ 메뉴 : 협약-연구비 현황-과제별 가상계좌 현황
- ▶ [지급유형-건별]재원별(기관부담금, 정부외)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 및 출력

\*건별 지급유형인데 연구비수령계좌로 등록된 계좌로 연구비 수령받은 경우,  
1) 과제정보의 지급유형이 '건별'인지 확인 2) 통합Ezbaro 재원별 가상계좌로 입금 필요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연구비수령계좌 및 카드결제계좌 정보 확인

- ▶ 메뉴 : 협약 > 협약 과제 > 수령계좌정보변경
- ▶ (IRIS 연계)연구비수령계좌/(통합Ezbaro)카드결제계좌 → 계좌 유효성 검증

\* (IRIS) 최초 연계 시에는 연구비수령계좌 기준으로 카드결제대금용 계좌 정보 등록

\* (지급유형-건별) 참여은행 계좌만 등록 가능/ 카드결제계좌는 참여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등록 가능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연구비수령계좌 펌뱅킹 이용동의

▶ 메뉴 : 협약 > 연구비 관리 > 펌뱅킹 동의

\*펌뱅킹 이용동의 미진행 시, 통합Ezbaro에서 연구비 이체 관련 서비스 이용 불가

**펌뱅킹 동의**

> 신청기관 정보  
 연구개발기관 (재)한국연구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 · 대표자 이광복 · 동의여부 -전제-

> 동의내역

순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동의자	동의일자	동의여부
1	신한은행					동의필요
2	신한은행					동의필요
3	신한은행					동의필요

> 펌뱅킹 서비스 이용 안내

○ 펌뱅킹 서비스 이용 시 은행에서 제공하는 펌뱅킹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간 지급이체  
 - 예금주 실명 및 성명 조회  
 - 이체명세(예금거래명세)의 전송 및 조회  
 - 실시간 지급이체 및 이체명세 관련 부수적 서비스  
 ○ 통합Ezbaro에서 연구비 집행(이체) 서비스를 이용 시 은행 펌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펌뱅킹 서비스 이용 동의 안내

○ 연구비수령계좌별로 펌뱅킹 이용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최초 1회 (단, 조회 권한이 없는 계좌의 연구비수령계좌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가 필요하지 않음) 동의여부는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조회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펌뱅킹 이용 동의는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통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연구비수령계좌와 통합Ezbaro에 등록된 Ezbaro에 등록된 계좌의 연구비수령계좌 정보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인증서 선택창**

인증서 저장 위치 선택

사용할 인증서 선택

소유자명    용도    발급기관    만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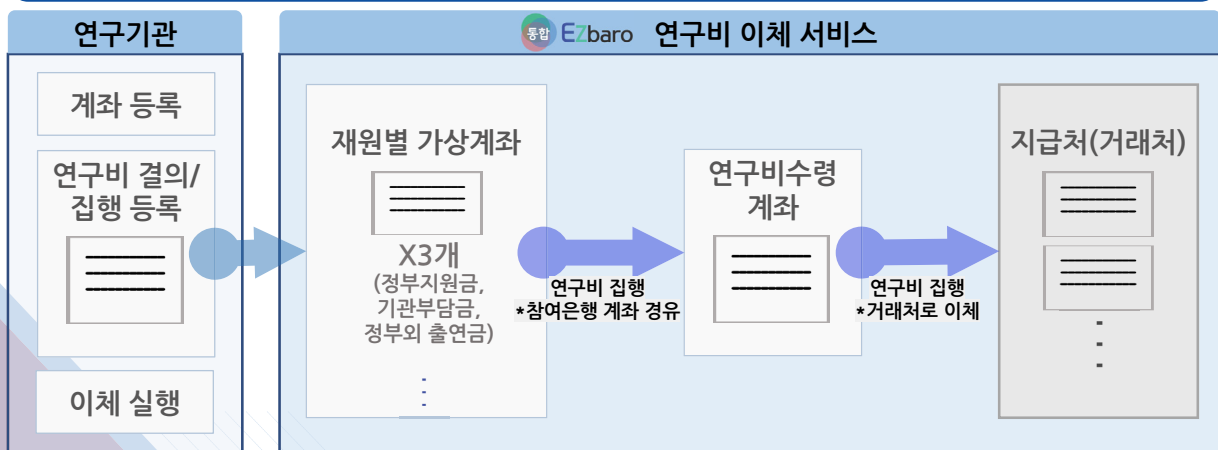
## ● 연구비수령계좌가 꼭 참여은행 계좌여야 하는지?



▶ 연구비수령계좌를 경유해서 거래처 계좌로 연구비 사용금액이 이체됩니다. 따라서, 연구비수령계좌는 참여은행 계좌로 등록되어야만 연구비 이체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연구비 지급은 자원별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집행에 대한 이체이력을 연구비수령계좌로 관리 가능

### (건별 지급유형) 연구비 집행 및 이체 서비스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기관부담금 분할납부 관리

- ▶ 메뉴 : 협약-연구비 관리-IRIS 입금계획 및 현황
- ▶ [지급유형-건별]미납금액에 대한 분납 신청(삭제 및 분납 계좌 추가)

The screenshot shows three tables from the Ezbaro system. The first table, '입금 계획 및 현황 상세', lists payment details for '기관부담금' (Institutional Burden Payment) with a total amount of 6,667,000. The second table, '입금 상세등록', shows a breakdown of the payment plan with a total of 6,250,000, including a '미납금액' (Outstanding Amount) of 6,250,000. The third table, '분납신청현황', shows the status of installment applications, with one application for 625,000 that is currently '입금가능' (Payment Possible).

입금유형	입금기관	분할입금회차	입금금액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입금예정일자	입금완료일자	입금완료여부	등록일자
기관부담금		1	6,667,000			2024-01-05	2024-02-02	입금완료	2024-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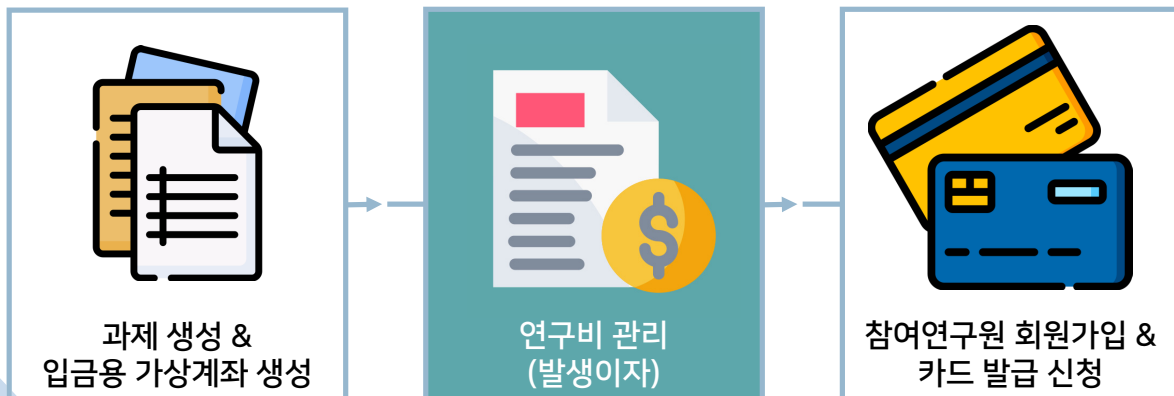
입금유형	입금기관	입금회차	입금대상금액	미납금액	입금금액	입금완료여부
기관부담금		1	6,250,000	6,250,000	0	미납

상태	입금유형	입금기관	분할입금회차	분할입금금액	은행	계좌번호	분할입금계획발생일자	분할입금완료여부	분할입금계획유료여부	입금가능
	기관부담금		1	625,000			2024-01-03	미납	입금가능	24-01-03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과제 생성부터 연구비 카드 발급까지



\*혁신법상 정부지원금 발생이자만 관리대상

## ● 협약 ▶ 연구비 관리 ▶ 이자관리(1/2)

▶ [지급유형-건별] 재원별 연구비관리가상계좌 발생이자의 사용용도 등록

▶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반납'만 가능

\*혁신법에 따라 발생이자 관리대상의 차이가 있음(전체 이자X, 정부지원금 이자만)

\*혁신법 시행령 개정(2026.3.10.)에 따라 국고반납 이외 사용용도 등록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이자 발생 내역

No	이자발생시기	이자발생일	이자금액	정부 지원금액	민간 지원금액	이자채 지불금액
1	연구 기간 중	2021-03-20	14,301	13,314	987	
2	연구 기간 중	2021-06-19	37,516	34,927	2,589	
3	연구 기간 중	2021-09-18	28,204	26,257	1,947	
4	연구 기간 중	2021-12-18	17,542	16,331	1,211	
이자금액 총 합계			97,563	90,829	6,734	

> 이자 사용 내역

발생이자에 대해 전역 등록해야 합니다.

No	이자발생시기	사용용도	비(세)목	이자발생일	이자금액	액신발령여부	비고
1	연구 기간 중	국고 반납		2021-03-20 토	13,314		
2	연구 기간 중	연구개발의 제후자		2021-03-20 토	987		
3	연구 기간 중	국고 반납		2021-06-19 토	34,927		
4	연구 기간 중	연구개발의 제후자		2021-06-19 토	2,589		
5	연구 기간 중	국고 반납		2021-09-18 토	26,257		
6	연구 기간 중	연구개발의 제후자		2021-09-18 토	1,947		
7	연구 기간 중	국고 반납		2021-12-18 토	16,331		
8	연구 기간 중	연구개발의 제후자		2021-12-18 토	1,211		
합계					97,563		

> 연구 기간 중 이자 미발생 사유

## ● 협약 ▶ 연구비 관리 ▶ 이자관리(2/2)

▶ [지급유형-건별] 기관부담금 발생이자 이체

> 기관부담금 발생이자 이체 목록 2/2 건

<input type="checkbox"/>	No	계좌종류	이자발생일	이체대상금액	이체여부	비고	이체자	이체일시	이체금액	이체은행명	이체	잔액	예금주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기관부담금	2024-03-23	3,145									
<input type="checkbox"/>	2	기관부담금	2023-12-16	7,219	이체완료								

수행기관이체 | 엑셀다운로드

기관정보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비수령계좌	이체대상금액	자계좌 이체번경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145	

총 이체금액 3,145

계좌이체 | 닫기

\*연구비수령계좌 또는 기관정보에 등록된 자계좌 중에 선택하여 이자 이체 가능

## ● 협약 ▶ 연구비 관리 ▶ 가상계좌 및 납부 확인서(원천징수)

▶ [지급유형-건별] 세무정보 동의(최초 1회)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가상계좌 및 납부 확인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구분: -전체-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이자발생년도: 2025 · 지급년도/분기: -전체-  
 · 과제번호: · 과제명: · 연구책임자:

**1** **세무정보 설정 동의**

**통합Ezbaro 기관정보 확인·이용 동의서**

1. 기관정보 확인 목적  
가. 연구개발기관의 동의 및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한 기관부담금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됨

2. 기관정보 확인 항목  
가. 기관정보  
나. 연구개발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필수항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용 및 보유기간  
가. 기관정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기관정보의 확인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나. 단 국가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에 포함된 기관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가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4.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가. 연구개발기관은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연구개발기관에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통합Ezbaro 기관정보 확인·이용 동의

**2** **세무정보 제공 동의서**

※ 통합Ezbaro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위하여 기관 정보를 통합Ezbaro 모계좌 전담운영에 제공합니다.

1. 기관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가. 통합Ezbaro 모계좌 전담운영

2. 기관정보를 제공하는 이용 목적  
가.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3. 제공하는 기관정보 항목  
가. 연구개발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4. 제공받은 자의 기관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기관정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기관정보의 확인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나. 단 국가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에 포함된 기관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가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5. 기관정보 제공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가. 연구개발기관은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연구개발기관에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통합Ezbaro 기관정보 제공 동의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세 보관용**  
**[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영수증번호	영수증일	영수증금액	영수증과목	영수증과목명
1	2020. 6. 30	1,000,000	이자	이자

영수증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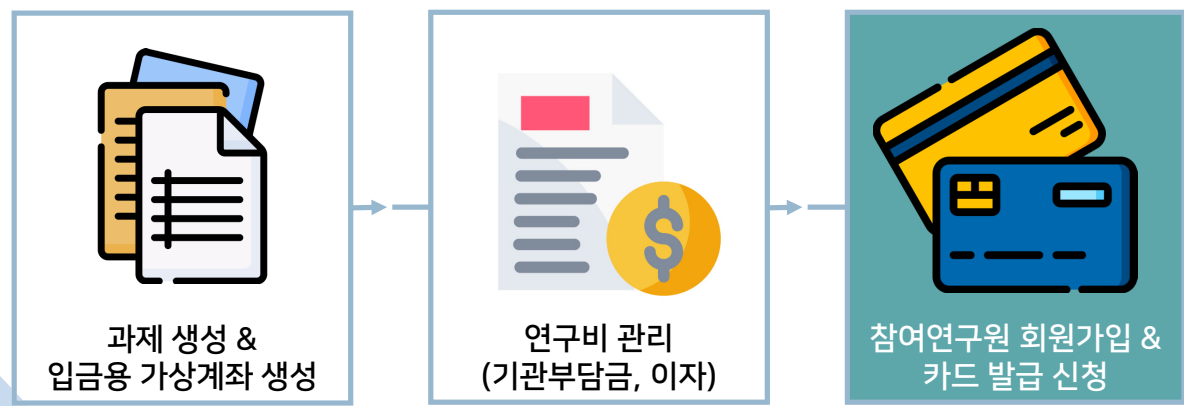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과목	과목명	금액	과목명	금액	과목명	금액
2020	6	30	2020	6	30	12	NN	A11	1,000,000	100	10.0	0

통합Ezbaro 시스템

**[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과제 생성부터 연구비 카드 발급까지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연구비 카드 유형

구분	단년도/다년도 연구비카드	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
사용범위	단년도 협약: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당해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카드 사용 다년도 협약: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단계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카드 사용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는 다수 과제 대상으로 연구비카드 통합하여 사용	대규모 연구개발기관에서 중앙구매로 다수 과제 대상으로 연구비카드 사용
발급방법	(온라인) 통합Ezbaro 연구비카드 신청 메뉴에서 진행	(오프라인) 카드사에서 별도 신청	(오프라인) 카드사에서 별도 신청
발급조건	통합Ezbaro 회원가입 및 과제의 카드발급대상자로 지정된 참여연구원	통합Ezbaro 회원가입 및 과제의 카드발급대상자로 지정된 참여연구원	통합Ezbaro 기관대표관리자 권한으로만 관리
재사용 가능여부	단년도 : 연차마다 카드 재발급하므로 재사용 불가 다년도 : 연차(매년)마다 재사용 신청으로 기존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카드유효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 (과제별 연구수행기간 내 집행 가능)	카드유효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

\* 통합RCMS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통합Ezbaro에서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다년도카드)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카드 재사용 신청 필수 / 그외 카드사 카드발급 대상자로 지정하면 별도 재사용 신청 불필요



## ● 연구비카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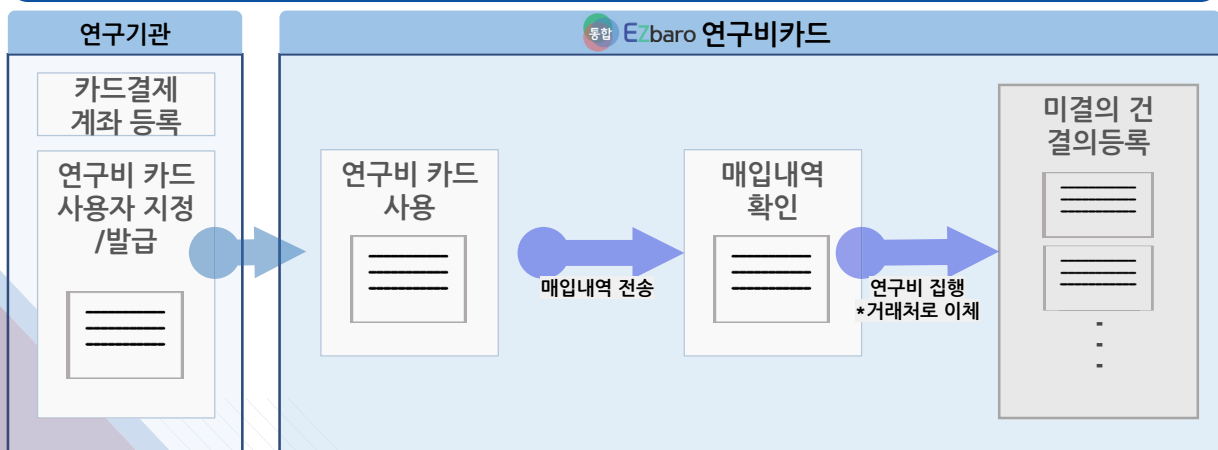


▶ 통합Ezbaro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연구비카드는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클린카드로 연구비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 관리가 가능하고, 카드 사용건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 상 조회 가능합니다.

\*연구비 카드 취소 건도 매입취소건에 대한 결의등록 필요

\*카드 결의등록은 당월 결제대금일 이전까지 등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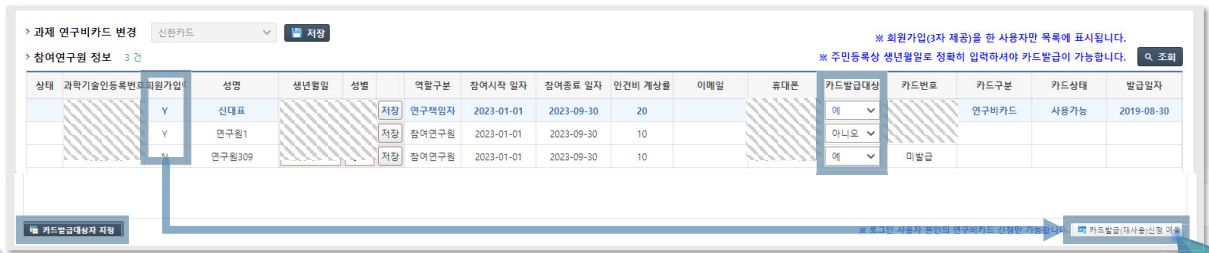
### (건별 지급유형) 연구비 카드 이용순서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카드 발급 및 재사용 신청

- ▶ [연구책임자/기관관리자] 카드발급대상자 지정 후 본인명의 카드신청 가능
- ▶ [카드발급대상자] 회원가입 완료한 참여연구원
- ▶ [카드발급 조건] 과제상태(수행중), 카드발급대상여부(예)
- ▶ [예시] 25년도 사용중인 연구비 카드의 경우, 당해기간 종료에 따라 차년도 과제 있는 경우 26년도 과제정보에서 카드대상자 지정 및 재사용 신청 필요



- \* 과제에 등록된 카드 명의자인 연구원의 국가연구자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일치여부 확인 필요
- \* 카드발급(재사용)신청 화면은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이후 과정은 카드사 문의 필요
- \* (다년도카드)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카드 재사용 신청 필수 / 그외 카드사 카드발급 대상자로 지정하면 별도 재사용 신청 불필요

## ● 연구비 카드 신규발급(재사용) 신청 시 오류 발생한 경우?



- ▶ 메뉴 : GAIA-통합연구지원-참여은행 및 카드사
- ▶ 통합Ezbaro 연구비 카드 전담 콜센터 문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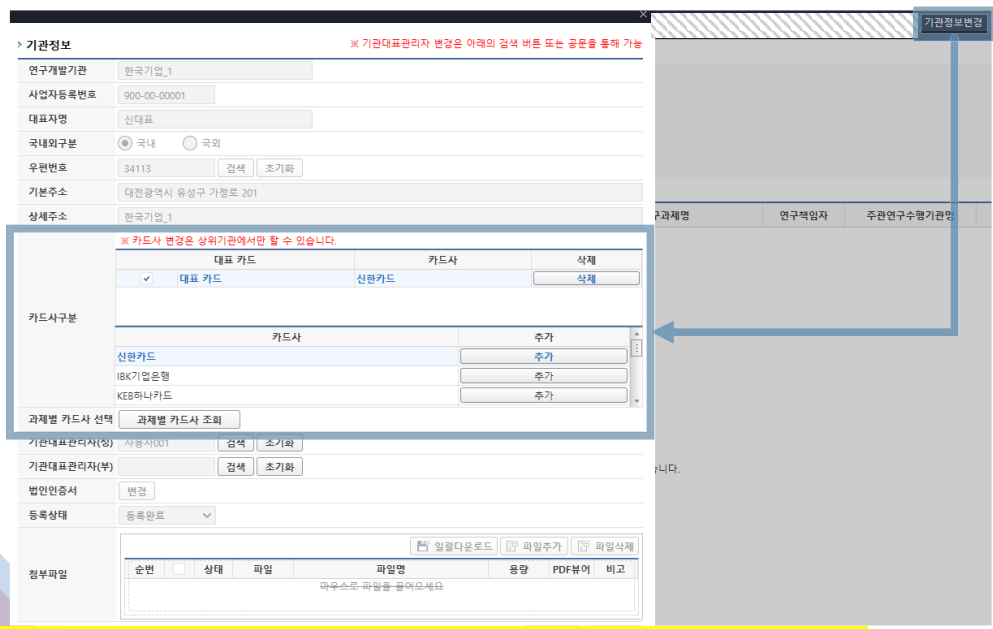


카드사	전담콜센터 전화번호	카드사	전담콜센터 전화번호
신한카드	1566-0369	BNK경남은행BC카드	02-520-4714~5
우리카드	1599-0661	KB국민카드	02-520-4714~5
IBK기업은행	1588-2588(517 바로 입력)	대구은행BC카드	02-520-4714~5
BNK부산은행BC카드	02-520-4714~5	전북은행BC카드	02-6936-3712~3
광주은행BC카드	02-520-4714~5	하나은행BC카드	02-520-4714~5

- \* 카드사 일반고객센터 번호X, 전담콜센터 전화번호로 연락 필요

## ● 연구비 카드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 > 메뉴 : 기관정보변경 > 카드사 변경
- > [기관대표관리자]법인 공인인증서 인증 후 카드사 변경사항 저장 가능



\* 기본값으로는 대표 카드사로 카드 발급됨(여러 개의 카드사 이용시 정보 추가 필요)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협약변경 반영 절차



- \*IRIS 사용 과제는 협약변경 승인 전까지는 과제는 집행중지 상태이며, 승인 후에 수행중으로 변경됨
- \*통합Ezbaro 정보수정 가능항목 : 참여연구원 수령계좌정보, 연구원 월인건비계상률, 과세여부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통합Ezbaro 수정 가능항목(1/3)

- ▶ 메뉴 : 협약-연구계획변경-협약변경
- ▶ [연구개발기관] 연구원 계좌 일괄 검증 및 등록

\*계좌 등록 및 월 인건비 계상률 외 협약정보 변경은 IRIS 통해 변경 가능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통합Ezbaro 수정 가능항목(2/3)

- ▶ 메뉴 : 협약-연구계획변경-협약변경
- ▶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월 인건비 계상률 수정

● 연구원 월 인건비 계상률 \* 참여연구원 목록에서 대상자를 클릭하시면 연구원 월 인건비 계상률 조회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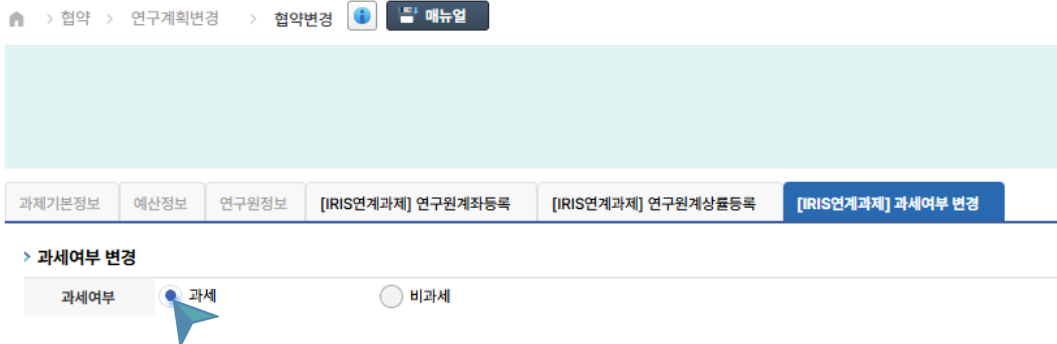
성명	참여연월	지급구분	월 인건비 계상률	원금	원율	월 급여	월 시작일자	월 종료일자
	2023-01	지급		0	0	0	2023-01-01	2023-01-31
	2023-02	지급		0	0	0	2023-02-01	2023-02-28
	2023-03	지급		0	0	0	2023-03-01	2023-03-31
	2023-04	지급		0	0	0	2023-04-01	2023-04-30
	2023-05	지급		0	0	0	2023-05-01	2023-05-31
	2023-06	지급		0	0	0	2023-06-01	2023-06-30
	2023-07	지급		0	0	0	2023-07-01	2023-07-31
	2023-08	지급		0	0	0	2023-08-01	2023-08-31
	2023-09	지급		0	0	0	2023-09-01	2023-09-30
	2023-10	지급		0	0	0	2023-10-01	2023-10-31

\*IRIS 과제정보 최초 등록 시만 연계되며 이후 IRIS 및 통합Ezbaro 개별 관리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통합Ezbaro 수정 가능항목(3/3)

- ▶ 메뉴 : 협약-연구계획변경-협약변경
- ▶ [전문기관] 과세여부 변경



\*과세 과제의 경우, 부가세 환입 처리 필요

## 통합Ezbaro 사용법(협약)

### ● 협약변경 반영 절차



## 주의! 연구개발기관 변경된 후 확인사항(1/4)

- 메뉴 : 협약-연구비 관리-IRIS 양도양수 이관동의
- IRIS 양도양수 승인 이후, 통합Ezbaro 내역이관 동의필요

홈 협약 연구비 관리 IRIS 양도양수 이관동의 **동영상**

사업구분: -전제- |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년도: 2024 | 연구개발기관: | 해외기관 협약과제 여부:  | 연구비지급유형: -전제-

과제번호(양도): | 과제번호(양수): | 연구책임자: | 연구비지급유형: -전제-

사업분류: | 사업분류검색: | 초기화

**양도양수 협약변경 현황**

승인일자/승인자	사업년도	전문기관	양도기관	양수기관	양도확인	양수확인	이재정보	이자정보	기간/장부외 미이재이자	
양도	양수	사업년도	전문기관	양도기관 (RIS 과제번호)	연구개발기	승인완료	승인완료	정부출연금 51,499,884   기업부담금 1,749,072   정부외출연금 0	발생이자 689,481   사용이자 606,555	2,84

**양도양수 동의 팝업**

양도과제가 건별과제인 경우 발생이자와 사용이자가 같아야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이자관리 메뉴에서 이자사용내역을 등록해주세요.

**양도양수 동의 팝업**

**> 양도양수 과제정보**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집행구분	재원구분	잔액(이자포함)	이자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집행구분
								일괄

**> 예산실적대비표**

비목	항목	당초연구개발비				소계 (E=A+B+C+D)	변경연구개발비				U=
		전년도이월금 현금(A)	현물(B)	현금(C)	현물(D)		전년도이월금 현금(F)	관물(G)	현금(H)	현물(I)	
직접비	인건비										

**> 승인현황**

양도승인여부	양도승인일자	양수승인일자	양수승인여부	양수승인일자	양수승인일자
N			N		

양도승인 | 양수승인 | 닫기

\* 기관부담금 발생이자 등 이자내역을 양도기관에서 모두 등록 후 내역이관 동의 가능

## 주의! 연구개발기관 변경된 후 확인사항(2/4)

- 양도양수 이관정보 : 참여연구원정보, 집행내역, 이자내역, 상시점검내역

**> 양도양수 과제정보**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양도과제				이자	양수과제		
		집행구분	재원구분	잔액(이자포함)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집행구분	
		건별	정부지원금	0	0			건별	
		건별	기관부담금	0	0			건별	
		건별	그 외 지원금	0	0			건별	

**> 이관과제정보**

참여연구원 | 기관부담금 납부 및 이관정보 | 예산실적대비표 | 상시점검

**> 참여연구원 목록** 1건 \* 양도 및 양수 과제 간의 중복 참여연구원은 인건비 계상률 정보가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성명	역할구분	참여시작 일자	참여종료 일자	총인건비계상률	이메일	핸드폰	참여여부
			2026-03-01	2027-02-28	-			

**> 월인건비계상률**

성명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조회된 결과값이 없습니다.

\* 양도양수 이관 동의 시 양도기관의 참여연구원 정보도 이관 대상 내역에 포함됨(연구비 정산 목적)

## 주의! 연구개발기관 변경된 후 확인사항(3/4)

- ▶ 메뉴 : 협약-연구비 관리-IRIS 사업비이전 이체승인
- ▶ [건별 지급유형]IRIS 사업비이전 승인 이후, 통합Ezbaro 이체승인 필요
- \*양도 기관이 건별 지급유형인 경우 통합Ezbaro 상에서 사업비이전에 따른 이체처리 가능

통합 Ezbaro > 연구비 관리 > IRIS 사업비이전 이체승인 > 동영상

·사업구분: -전체- ·전문기관: -선택- ·사업년도: 2025 ·연구개발기관:   해외기관 협약과제 여부  
 ·과제번호(영도):  ·과제번호(영수):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지급유형: -전체-  
 ·사업분류:    ·과제상태: -전체- ·과제분류: -전체-

> 사업비이전 승인 현황

전문기관	사업비이전(영도)			사업비이전(영수)			대상금액	이체진행상태
	과제번호 (IRIS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집행구분	과제번호 (IRIS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집행구분		
			건별			일괄	100,000,000	미이체
			건별			일괄	120,000,000	미이체
			건별			일괄	90,000,000	미이체
			건별			건별	10,000,000	이체완료
			일괄			일괄	90,177,047	IRIS 추가지급 필요
			일괄			일괄	25,000,000	IRIS 추가지급 필요
			일괄			일괄	5,000,000	IRIS 추가지급 필요
			일괄			일괄	40,000,000	IRIS 추가지급 필요
			일괄			일괄	30,000,000	IRIS 추가지급 필요
			일괄			일괄	90,000,000	IRIS 추가지급 필요
			일괄			일괄	60,000,000	IRIS 추가지급 필요
			일괄			건별	15,000,000	IRIS 추가지급 필요

## 주의! 연구개발기관 변경된 후 확인사항(4/4)

- ▶ [집행잔액 및 국고반납 이자 이체] 일괄 → 건별 지급유형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월금 계좌로 이월금(집행잔액), 국고반납 이자 이체되었는지 확인 필요

통합 Ezbaro > 연구비 현황 > 과제별 가상계좌 현황

과제상세정보  
 ·과제명:   
 ·과제번호:   
 ·연구수행기관:

> 가상계좌 목록

계좌종류	가상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과제구분	과제번호	과제명	단계	연차	연구수행기관	확인증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외출연금										

> 입금 정보

입금일자	이월금/국고반납 이자
2023-03-01	
2023-05-08	이월금이체
2023-03-29	00143581260208
2023-03-29	00143581260208
2023-03-29	00143581260208
2023-03-29	00143581260208
2023-07-06	이월금이체

합계 4,743,737,993

단계 변경됐을 때 이월금, 국고반납 이자 미이체하는 경우 다 발생

\*미이체 시 정산 후 연구비 사용잔액 이체 시 잔액부족 오류 발생

# 03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 연구비 사용내역 등록 절차



\*연구비 지급유형은 한국연구재단 범부처연구비관리팀에서 관리 중

#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 ● 연구비 지급유형

구분	일괄지급	건별지급
주요 대상	정부(지자체), 대학, 출연연, 특정연, 테크노파크 등 비영리법인, 공기업, 외국 소재의 기관	기업(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학회, 협회 등 비영리 법인 중 연구지원부서 (*연구비 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기관
주요 내용	연구비 집행내역을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통합Ezbaro에 등록 (연계 기관의 경우, 내부 시스템과 통합Ezbaro 간 연동)	연구비 결의정보 입력 후 통합Ezbaro를 통해 연구비 이체 및 집행내역 관리 (편뱅킹서비스 기반 3자 이체방식 활용)
주요 특징	연구비 집행 사후 검증 관리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 통제 기능 인정	연구비 집행 사전 모니터링 및 건별지급으로 임의적 출금 방지로 연구비 유용 방지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35조, 53조, 6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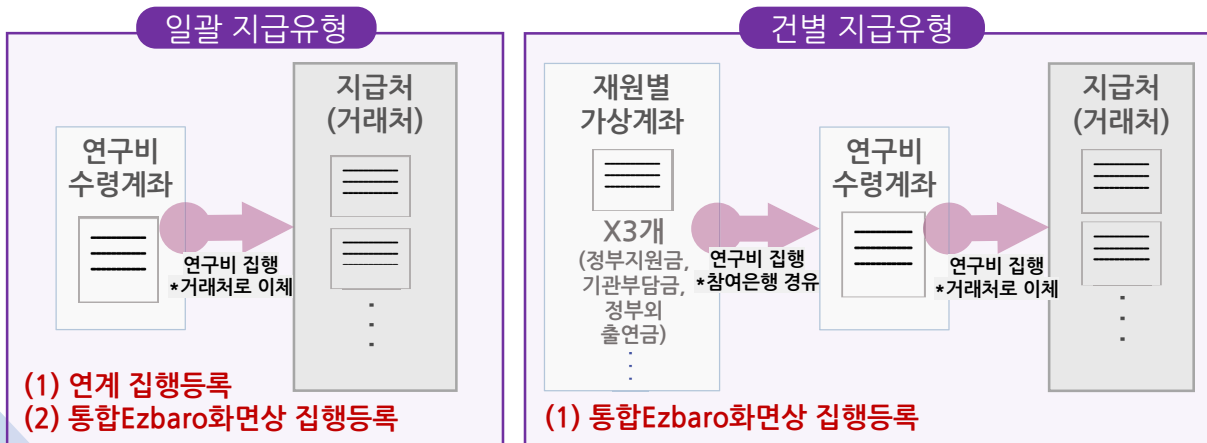
\*연구지원부서란?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을 담당하는 별도의 연구비 관리 전담부서를 의미함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 100억원 이상 과제는 지급유형을 '건별'로 지정할 수 있음(기본값 : 미지정)

## ● 연구비 지급유형에 따른 연구비 집행등록 방식의 차이?



> 차이점 : 연구비 지급유형/연구수행기관 자체 시스템 ↔ 통합Ezbaro 연계



\*단, 협약예산과 수정예산(당해년도 예산)의 현금 금액이 동일해야 결의 및 집행 등록 가능

#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 ● 예산통제상태 및 현황

- ▶ 메뉴 : 집행-연구비이체-연구비이체 홈
- ▶ [지급유형-건별] 총예산, 예산통제금액, 결의가능여부, 이체가능금액 조회

연구비이체 HOME

이체가능금액 1,846,207,293 | 가상계좌 입금현황

No	비목	항목	총예산 (연년도이월금 + 상해년도예산 + 이자)	결의금액	차년도이월금	실입항목액	결의가능금액 (총예산 - 결의금액 - 차년도이월금)	결의가능여부
1	직접비	인건비	150,000,000	150,000,000	0	150,000,000	0	등록불가
2	직접비	(일반)학생인건비	0	0	0	0	0	등록불가
3	직접비	(특례)학생인건비	0	0	0	0	0	등록불가
4	직접비	(일반)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등록불가
5	직접비	(특례)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등록불가
6	직접비	연구활동비	422,790,000	54,531,087	0	54,531,087	368,258,913	등록가능
7	직접비	연구재료비	2,002,600,000	536,269,130	0	536,269,130	1,466,330,870	등록가능
8	직접비	연구수당	10,600,000	0	0	0	10,600,000	등록가능
9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등록불가
10	직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	0	0	0	0	등록불가
11	직접비	연구개발부담비	0	0	0	0	0	등록불가
12	직접비	보안수당	0	0	0	0	0	등록불가
13	직접비	목적성간접비	0	0	0	0	0	등록불가
14	간접비	간접비(영지(인력지원비))	6,900,000	5,882,490	0	5,882,490	1,017,510	등록가능
15	간접비	간접비(영지(연구지원-생리활동))	6,900,000	5,882,490	0	5,882,490	1,017,510	등록가능

- \*현물의 경우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로 집행등록 가능
- \*이체가능금액은 예산 대비가 아닌, 실 입금된 연구비 대비 이체 가능한 금액이 표기됨

## ● 결의가능금액은 있는데, 잔액부족 오류 뜨는 경우?



- ▶ 메뉴 : 집행-연구비이체-연구비이체 홈 > [가상계좌 입금현황]
- ▶ 자원별 가상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정보 조회 가능

연구비이체 HOME

가상계좌 입금현황

가상계좌 목록 ※ IRIS 과제(일괄 지급유형)는 통합Ezbaro 연구비관리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좌종류	가상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과제구분	과제번호	과제명	단계	연차	연구수행기관	확인종	가능금액 (잔액 - 차년도이월금)	결의가능여부							
정부지원금											166,700,000	등록가능							
기관부담금											0	등록불가							
그 외 지원금											0	등록불가							
<p>&gt; 입금 정보</p> <table border="1"> <thead> <tr> <th>입금일자</th> <th>금액</th> <th>적요</th> </tr> </thead> <tbody> <tr> <td>2025-12-12</td> <td>171,000,000</td> <td></td> </tr> <tr> <td>합계</td> <td>171,000,000</td> <td></td> </tr> </tbody> </table>											입금일자	금액	적요	2025-12-12	171,000,000		합계	171,000,000	
입금일자	금액	적요																	
2025-12-12	171,000,000																		
합계	171,000,000																		

\*연구비 예산 ≠ 연구비 지급금액 합계 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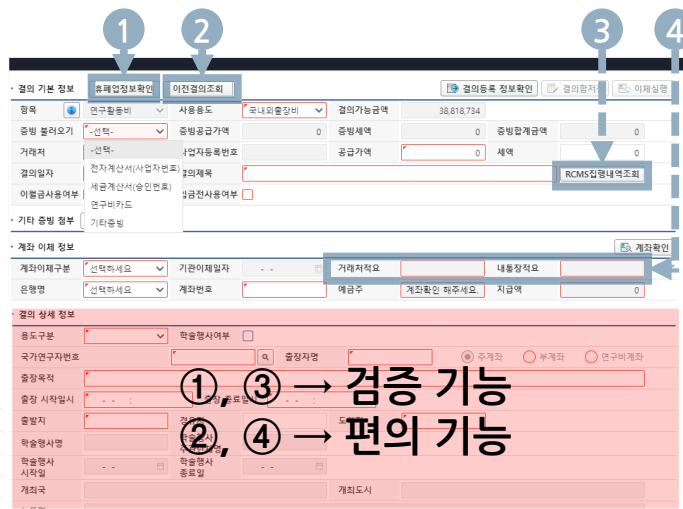
## ● 연구비 사용내역 등록 절차



#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 ● 연구비 집행 관련 세부 기능

- > ① 휴폐업정보확인 : 기업 단위 거래처의 경우 휴폐업정보 조회 및 검증 기능
- > ② 이전결의조회 : 기존 결의정보 불러오기 기능
- > ③ RCMS집행내역조회 : 통합Ezbaro↔통합RCMS 연관 집행내역 조회 기능
- > ④ 거래처 및 내통장적요 : 이체내역 상의 적요 수정



#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 ● 연구비 사용용도별 증빙유형 관리

(예) 외자구분 - 외자인 경우, 수입신고서류 첨부

## ● 집행 ▶ 연구비이체 or 결의등록 ▶ 인건비

- ▶ 인건비 총 지급금액 = 실지급금액 + 법정 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 ▶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건강보험 직장가입일자

법정부담금(B)	퇴직급여충당금(C)	건강보험 직장가입일자	입금전사용여부	기관이체일자	증빙파일
이월금사용여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직급	지급대상월
지급대상월	인건비 계상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총지급금액(A+B+C)
					실지급금액(A)

\*자계좌 이체 여부를 체크하는 경우 : 연구비수령계좌 외 기관(법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자계좌 이체 가능 여부는 연구비 정산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필히 확인 필요)

\*입금전사용여부 : 연구비를 지급받기 전 연구개발기관 자금으로 연구비 사용한 경우

## ● 인건비 집행 전 사전 확인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 ▶ 지급구분(현금/현물)에 따라 월급여x인건비 지급율로 최대 집행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현물 인건비 기준금액이 산정됨

▶ 참여연구원 목록

과목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역할구분	참여시작 일자	참여종료 일자	연 인건비 계상율	이메일	핸드폰	참여여부
		연구책임자			30			참여
		참여연구원			20			참여
		참여연구원			40			참여
		참여연구원			40			참여
		참여연구원			50			참여
		참여연구원			29			참여
		참여연구원			36			참여
		참여연구원			70			참여
		참여연구원			84			참여
		참여연구원			31			참여

▶ 연구원 월 인건비 계상률

성명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지급구분												
		월 급여												
		인건비 지급												
		현금												
		현물												
		월 시작일자												
		월 종료일자												
		과목 인건												

- \*'인건비'의 총 지급금액은 연구원 월 참여율의 월급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인건비 집행 시, 지급월이 포함되는 연구원 참여기간의 인건비계상률 정보가 있는 경우만 조회 가능

## ● 집행 ▶ 연구비이체/결의등록 ▶ 연구활동비(1/2)

- ▶ [증빙 우선]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기타) 선택 후 결의정보 등록
- ▶ 연구비 집행등록 순서 : ①결의추가 ➡ ②사용용도 및 증빙 선택 ➡ ③결의정보 입력 ➡ ④결의등록 정보확인 ➡ ⑤결의함저장 ➡ ⑥이체실행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연구활동비(승인 기준)'.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with numbered callouts indicating the registration steps:

- 1 결의추가**: Located at the top navigation bar.
- 2 결의정보**: Points to the '결의 기본 정보' section, which includes fields for '연구활동비' and '사용용도'.
- 3 결의정보확인**: Points to the '결의정보확인' section, which includes fields for '연구가능금액' and '연구가능기간'.
- 4~6 결의함저장**: Points to the '결의함저장' section, which includes fields for '결의정보' and '결의함저장'.

## ● 집행 ▶ 연구비이체/결의등록 ▶ 연구활동비(2/2)

- ▶ [결의정보 우선] 결의 내 여러 개의 사용용도 등록 가능
- ▶ 결의등록내역의 공급가액 = 증빙등록내역의 공급가액 합계

> 결의등록내역 3 건 [행주가] [행수정] [행삭제]

순번	세목	사용용도	결의가능금액	공급가액 총액	세액 총액	사용금액 총액 (기타소득세 및 법정부담금 포함)	결의상세정보
<input type="checkbox"/>	1	연구활동비	회의비	36,000,00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input type="checkbox"/>	2	연구활동비	국내외출장비	36,000,00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연구활동비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등)	36,000,000	6,000	6,00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

> 증빙등록내역 2 건 [일괄 계좌확인] [행주가] [행삭제]

순번	증빙유형	증빙정보	증빙세액	증빙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휴폐업정보확인	입금전사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기타증빙	-	-	3,000	0			<input type="button" value="확인필요"/>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기타증빙	-	-	3,000	0			<input type="button" value="확인필요"/>	<input type="checkbox"/>

기타 증빙 정보

## ● 통합Ezbaro 집행등록 방법 (1/4)

- ▶ 예산통제현황 확인
- ▶ 이체가능금액이 있는지 확인

> 연구비이체 HOME 이체가능금액 760,771,380 [가상계좌 입금현황]

No	비목	항목	총예산 (전년도이월금 + 당해년도예산 + 이자)	결의금액	자년도이월금	실집행금액	결의가능금액 (총예산 - 결의금액 - 자년도이월금)	결의가능여부
1	직접비	인건비	597,500,820	278,722,700	0	278,722,700	318,778,12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가능"/>
2	직접비	(일반)학생인건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3	직접비	(특례)학생인건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4	직접비	(일반)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5	직접비	(특례)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6	직접비	연구활동비	312,999,180	90,505,920	0	81,687,179	222,493,26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가능"/>
7	직접비	연구재료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8	직접비	연구수당	119,500,000	0	0	0	119,500,00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가능"/>
9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10	직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11	직접비	연구개발부담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12	직접비	보안수당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13	직접비	목적성간접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14	간접비	간접비(비영리)	100,000,000	0	0	0	100,000,00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가능"/>
15	현물	인건비	0	0	0	0	0	<input type="button" value="등록불가"/>

## ● 통합Ezbaro 집행등록 방법 (2/4)

- ▶ 결의가능여부 확인 후 '등록가능'으로 표시된 항목 선택
- ▶ 연구활동비 - 증빙우선/ 결의정보 우선 방식 선택

총예산 (전년도이월금 + 당해년도예산 + 이자)	결의금액	차년도이월금	실집행금액	결의가능금액 (총예산 - 결의금액 - 차년도이월금)	결의가능여부
597,500,820	278,722,700	0	278,722,700	318,778,120	등록가능
0	0	0	0	0	등록불가
0	0	0	0	0	등록불가
0	0	0	0	0	등록불가
			81,687,179	222,493,260	등록가능
			0	0	등록불가
119,500,000	0	0	0	119,500,000	등록가능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입력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 ● 통합Ezbaro 집행등록 방법 (3/4)

- ▶ 연구활동비 - 결의정보 우선 방식 선택한 경우
- ▶ 연구활동비 내 여러 개의 사용용도를 한 번의 결의정보 입력을 통해 등록가능
- ▶ 결의상세정보 입력

**결의기본정보**

결의일자: 2025-09-16 | 결의제목: test | 이월금사용여부:

**결의등록내역**

순번	항목	사용용도	결의가능금액	공급가액 총액	세액 총액	사용금액 총액 (기타소득세 및 법정부담금 포함)	결의상세정보
1	연구활동비	국내외출장비	222,493,260	0	0	0	등록

**결의상세정보**

연구활동비 상세 정보

용도구분: [선택] | 학술행사여부:   
 국가연구자번호: [입력] | 출장차량: [입력]  
 출장목적: [입력]  
 출장 시작일시: [입력] | 출장 종료일시: [입력]  
 출발지: [입력] | 경유지: [입력] | 도착지: [입력]  
 학술행사명: [입력] | 학술행사 주관단체명: [입력]  
 학술행사 시작일: [입력] | 학술행사 종료일: [입력]  
 개최국: [입력] | 개최도시: [입력]  
 논문명: [입력]  
 발표주제: [입력]

## ● 통합Ezbaro 집행등록 방법 (4/4)

- › 결의등록 후 **이체내역** 확인
- › **거래처 계좌로 이체 실행**

순번	결의제목	지급처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가액	부가세	이체금액
1						0	0	1
2						1	0	1
합계						1	0	2

## ● 집행 ▶ 연구비이체/결의등록 ▶ 현물등록

- › 현물 등록 : 민간부담금 중 연구개발기관에서 보유한 자산을 현금 가치로 환산하여 연구비에 포함시켜 등록함으로써 연구비를 집행하는 개념(연구활동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 › **현물 결의등록 완료 시 별도의 집행등록 없이 '지급완료' 로 처리**
- › 현물 결의등록 완료 시 결의가능금액 자동 차감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참여연구원의 현금/현물 정보 확인 필요

\*현물부담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거래처'는 연구개발기관명 입력

## ● 집행 ▶ 등록/수정 ▶ 연구비카드 결의등록

- ▶ [연구개발기관] 카드매입내역 조회 후 미결의건에 대한 결의 추가
- ▶ 과제 단위 카드 미결의내역 조회 가능, 다건 결의 가능

**1** 카드매입내역 조회 후 미결의건에 대한 결의 추가

**2** 결의등록 화면에서 결의 추가

## ● 결의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 건 어떻게 조회하나요?



- ▶ 메뉴 : 마이페이지 - 체크리스트 [미결의 카드사용내역]

**체크리스트**

<b>수행중</b>	연구비 이체실패 0	양도양수 미동의 11	<b>정산 준비</b>	상시점검 보완요청 0	<b>정산 현황</b>	정산보고서 작성중 0	<b>기타</b>	수정세금계산서 0
	<b>미결의 카드사용내역 0</b>	기관부담금 이자 현황 0		집행내역등록완료 대기 0		IRIS 연계 0		
	입금대기 0			이월금 확인 0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필요 8		
	연구비 사용중지 1			이자 발생내역 0		수행기관 이체 0		
	기관부담금 납부현황 0							



\*카드 결의 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

## ● 집행 ▶ 취소/환입 ▶ 이체취소 or 집행취소

- ▶ 취소구분 선택(전체취소, 부분취소)
- ▶ 전체취소 : 자동 취소 공급가액 및 부가세입력값 표시
- ▶ 부분취소 : 취소 공급가액 및 부가세입력값 입력
- ▶ 이체취소 또는 집행취소 계좌 유형 : IR계좌

\*이체취소의 경우 이체 권한이 있는 기관관리자 등 사용자만 수행 가능, 참여연구원은 조회만 가능

## ● 집행 ▶ 취소/환입 ▶ 부가세환입

- ▶ 연구비로 환원되는 부가가치세 환입 처리
- ▶ 연구수행기간 내 부가가치세 환급 시 연구비 예산으로 재사용 가능
- ▶ 부가가치세 환입 계좌 유형 : IR계좌

\*과제기본정보에 부가세 여부가 공란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입 불가

\*부가가치세 환입의 경우, 다중 선택하여 하나의 IR 계좌를 발급하여 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환입 대상이 있음에도 미환입한 경우,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정산 ▶ 정산준비 ▶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환입

▶ 부가가치세 금액 입력 시 정부지분율에 따른 환입대상금액 자동 계산

홈 > 정산 > 정산준비 >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환입 메뉴

> 위탁과제 목록

상태	순번	사업년도	연차	IRIS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합의예산 (천원)	합의예산 (천원)	정부 지분율	기관부담 지분율	그 외 지분율	연구비 기지급금액	부가세금액	반납대상금액 (정부지분액)
1	2025	1						100,000,000	0	100	0	0	100,000,000		
2	2026	2						100,000,000	0	100	0	0	0		
3	2026	2						100,000,000	0	100	0	0	0		
합계								300,000,000	0				100,000,000		0

▶ 저장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환입 처리는 전문기관마다 상이함

- (1) 부가가치세 환입분을 별도 반납으로 처리
- (2) 부가가치세 환입처리 후 잔액으로 반납처리 등  
(전문기관 연구정산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통합Ezbaro 사용법(집행)

● 연구비 사용내역 등록 절차



## ● 집행 ▶ 연구비 사용 현황 ▶ 예산실적대비표

- ▶ 예산실적대비표, 집행방법별 집행내역 조회(결의등록, 집행일자, 이체일자)
- ▶ 미등록 실적(매입/취소) 조회

비목	세목	전년도이월금		예산잔액		전년도이월금		예산잔액		예산이자발생액(K)	예산총계(L=J-K)	전년도이월금		예산잔액		
		원금(A)	원물(B)	원금(C)	원물(D)	원금(E)	원물(F)	원금(G)	원물(H)			원금(I)	원물(J)	원금(M)	원물(N)	
직접비	인건비	0	0	0	15,300,000	15,300,000	0	0	0	0	15,300,000	15,300,000	0	0	0	0
	(일반)확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제)확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연구시설·장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제)연구시설·장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활동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재료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수당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개발부담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안수당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직성간접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간접비	간접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사용기간 조회 시 다년도 연구기간 시작일자 ~ 정산 도래기간까지의 일자 기준으로 조회 권장
- \*당해년도 예산(수정예산) 대비 초과 집행된 건이 있는지 예산실적 현황을 통해 확인
- \*사용일자(집행 + 이체일자) 기준으로 과제에 등록된 전체 사용내역 기준의 예산실적대비표 조회 가능
- \*집행일자: 집행등록일자, 이체일자: 계좌이체일(연구비 카드는 이체일자 없음), 사용일자: 집행+이체

## ● 집행 ▶ 집행내역등록완료 ▶ 집행내역완료

- ▶ [연구개발기관] 집행내역 등록 완료 후 차년도 과제로 집행 잔액 자동 이월 (다년도 연구기간, 전년도 과제정보, 차년도 과제정보 확인)

비목	세목	전년도이월금(원금)	전년도이월금(원물)	예산잔액		집행잔액		사용잔액		이월잔액	
				원금	예산잔일자	원금	원물	원금	원물	원금	원물
직접비	(특제)확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일반)연구시설·장비	0	0	0	0	0	0	0	0	0	0
	(특제)연구시설·장비	0	0	0	0	0	0	0	0	0	0
	연구활동비	0	0	11,703,000	0	11,703,000	0	0	11,703,000	0	11,703,000
	연구재료비	0	0	203,849,000	0	203,849,000	0	0	203,849,000	0	203,849,000
	연구수당	0	0	5,473,000	0	5,473,000	0	0	5,473,000	0	5,473,000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연구개발부담비	0	0	0	0	0	0	0	0	0	0
	보안수당	0	0	821,000	0	821,000	0	0	821,000	0	821,000
	특직성간접비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249,213,000	0	249,213,000	0	0	249,213,000	0	249,213,000
간접비	간접비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262,994,000	0	262,994,000	0	13,781,000	249,213,000	0	249,213,000

- \*차년도 과제가 시스템 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 이월 가능 (차년도 과제 생성이 늦게 된 경우, 집행내역 등록 완료 취소 후 재진행)
- \*집행내역완료 취소 시 과제 집행 잔액을 기준으로 이월금 반영, 차년도에서 이월금 세목변경 필요

# 04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단계 정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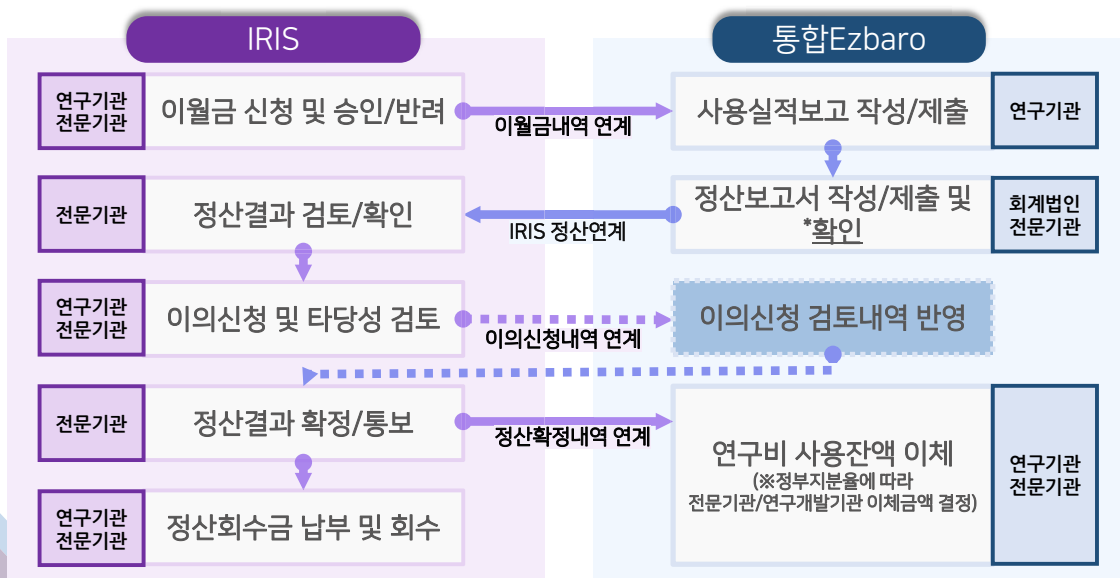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단계 정산 절차 (IRIS 시스템 활용하는 경우)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통합Ezbaro-IRIS 정산 연계 프로세스



\*(위탁정산) 정산보고서는 위탁정산기관인 회계법인에서 작성, 최종적인 확인은 전문기관에서 진행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통합Ezbaro 정산진행상태

	정산상태	설명
단계 내 과제	과제진행중	과제 진행중 상태
	과제종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종료 상태
	집행내역완료	집행내역등록 완료 상태
	사용실적보고서작성	사용실적보고서 기관관리자에게 제출 및 집행 마감된 상태
연구기관 정산반려 가능	사용실적보고서검토완료	기관관리자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완료 상태
	회계감사의견서승인	회계감사부서장 승인 완료 및 기관관리자 최종저출 이전 상태
	보고서제출(상위기관)	하위과제가 상위과제로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완료한 상태
	정산신청(전문기관제출)	최상위과제에서 전문기관으로 보고서 제출하여 과제구성도 하위 과제의 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
전문기관 문의 필요	정산검토중(위탁)	정산 점검진행상태로 집행내역 검토 중인 상태
	정산검토완료(위탁)	정산 점검진행상태로 집행내역 검토 완료한 상태
	정산보고서작성	위탁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작성 중인 상태
	정산보고서제출	위탁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작성 후 제출한 상태
	정산검토중	직접정산의 경우, 정산 집행내역 검토 진행 중인 상태
	정산검토완료	직접정산의 경우, 정산 집행내역 검토 완료한 상태
	정산결과통보	정산 결과를 통보한 상태
	이의신청	결과 통보 이후,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한 상태
	정산완료(결과확정)	전문기관에서 정산 결과에 대해 확정 처리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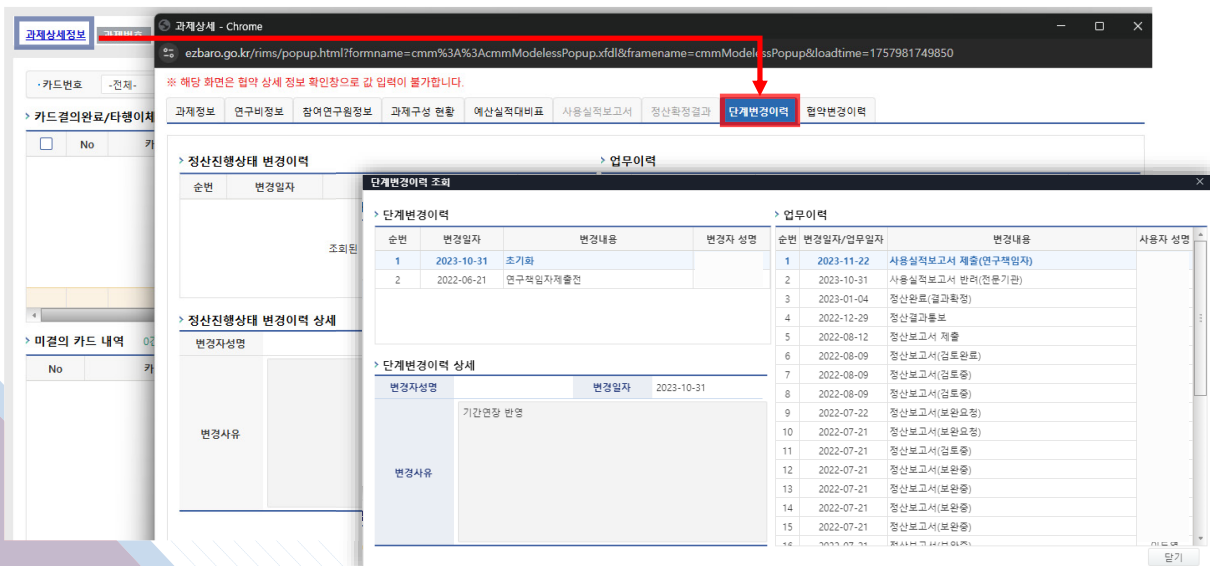
\*IRIS로 정산보고서 결과 전송되면 IRIS 정산 연계상태로 변경/ IRIS 정산 연계 후 IRIS에서 정산취소 가능

\*IRIS에서 이의신청 검토완료된 건은 'IRIS 이의신청 완료', 정산확정 건은 '정산확정' 상태로 표시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연구개발과제 정산진행상태 변경이력 조회

- ▶ 메뉴 : 정산-연구비정산-정산결과 확인, 협약과제 상세탭-단계변경이력
- ▶ 단계정산 내역 확인 및 정산진행상태 변경이력 조회



# 04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정산 전 확인사항 -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정산진행현황 조회

▶ 메뉴 : 연구비정산-정산진행현황

▶ 정산유형, IRIS정산연계 대상 과제, 이월금, 사용실적보고 대상여부 등

정산진행현황

정산진행현황

순번	정산진행상태	연차사용내역 보고일자	IRIS 정산연계	이월금 승인	사용실적 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	정산 증빙검토	정산 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일자	이의신청 여부	
1											
2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미제출
3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미제출
4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대상아님
5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대상아님
6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대상아님
7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대상아님
8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대상아님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연구비 정산전 확인사항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예산통제상태 및 현황

› 메뉴 : 집행-연구비이체-연구비이체 홈

› [지급유형-건별] 세목별 총예산, 예산통제금액, 결의가능여부, 이체가능금액

> 연구비이체 HOME 이체가능금액 760,771,380

No	비목	항목	총예산 (전년도이월금 + 당해년도예산 + 이자)	결의금액	자년도이월금	실집행금액	결의가능금액 (총예산 - 결의금액 - 자년도이월금)	결의가능여부
1	직접비	인건비	597,500,820	278,722,700	0	278,722,700	318,778,120	등록가능
2	직접비	(일반)학생인건비	0	0	0	0	0	등록불가
3	직접비	(특례)학생인건비	0	0	0	0	0	등록불가
4	직접비	(일반)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등록불가
5	직접비	(특례)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등록불가
6	직접비	연구활동비	312,999,180	90,505,920	0	81,667,179	222,493,260	등록가능
7	직접비	연구재료비	0	0	0	0	0	등록불가
8	직접비	연구수당	119,500,000	0	0	0	119,500,000	등록가능
9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등록불가
10	직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	0	0	0	0	등록불가
11	직접비	연구개발부담비	0	0	0	0	0	등록불가
12	직접비	보안수당	0	0	0	0	0	등록불가
13	직접비	목적성간접비	0	0	0	0	0	등록불가
14	간접비	간접비(비영리)	100,000,000	0	0	0	100,000,000	등록가능
15	환불	인건비	0	0	0	0	0	등록불가

\*정산 전 누락된 집행내역(자계좌 이체건 등) 있는지 최종확인 필요

## ● 집행 ▶ 연구비 사용 현황 ▶ 사용내역조회

### › 세부 연구비 사용내역 조회 가능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연구비 사용내역 조회' (Research Expense Tracking) interface. On the left, there is a list of transactions with columns for No, 결의일자 (Decision Date), 이체일자 (Transfer Date), and 집행일자 (Execution Date). A detailed view of a transaction is shown on the right, enclosed in a red box. This view includes fields for '결의 기본 정보' (Decision Basic Information) such as '항목' (Item), '사용용도' (Usage), and '증빙구분' (Evidence Category). It also shows '증빙 첨부' (Evidence Attachment) with a table of files, including '급여 관련 서류' (Salary related documents) and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Personnel cost management plan and status). The bottom section shows '계좌이체 정보' (Bank Transfer Information) with fields for '계좌이체구분' (Bank Transfer Category), '은행명' (Bank Name), and '계좌번호' (Account Number).

\* 집행일자: 집행등록일자, 이체일자: 계좌이체일(연구비 카드는 이체일자 없음), 사용일자: 집행+이체

\* 단계 내 연구기간 동안에는 집행내역 상 등록된 증빙자료 수정 가능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특정 항목 안에서는 집행취소 없이 세목변경 가능

## ● 회계법인에서 연구기관 내부규정 등록 요청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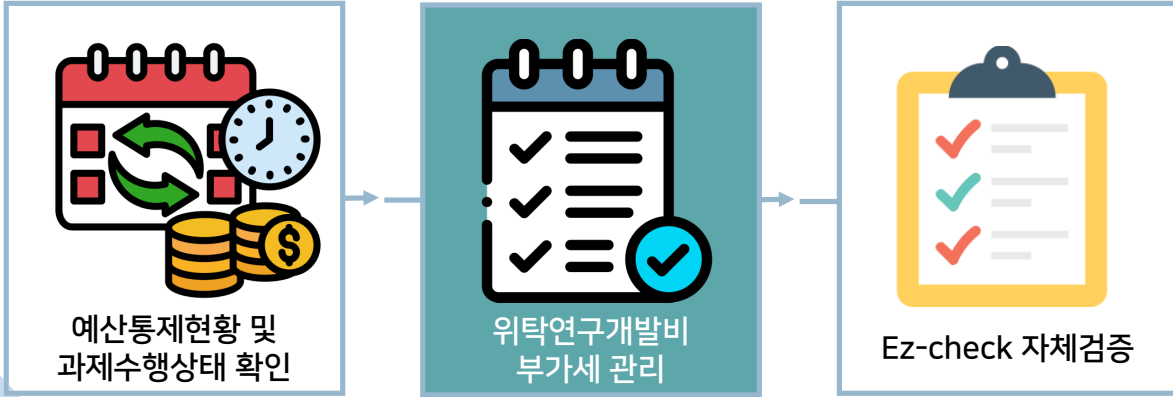


- › 메뉴 : 기준관리 > 연구비 규정관리(매뉴얼, 인사, 급여 등)
- › 집행내역 및 증빙검토/보완, 상시점검 보완 시 활용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내부규정 관리' (Internal Regulation Management) interface. A modal window titled '내부규정 조회' (Internal Regulation Search) is open, displaying a table of regulations. The table has columns for '순번' (No.), '설명' (Description), '첨부파일' (Attachment), and '구분' (Category) with sub-columns for '매뉴얼' (Manual), '국내외여비' (Domestic/Foreign Travel), '연구수당' (Research Allowance), '인사' (Personnel), '급여' (Salary), '전문가활동' (Expert Activity), and '사용 여부' (Usage Status). Below the table, there is a section for '첨부파일' (Attachment) with a table showing file details like '순번' (No.), '파일명' (Filename), '파일명' (Filename), '용량' (Size), 'PDF뷰어' (PDF Viewer), and '비고' (Remarks). A red dashed arrow points from the '내부 규정 확인' (Check Internal Regulation) button at the bottom left to the attachment table.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 연구비 정산전 확인사항



## ● 정산준비 ▶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환입

▶ 부가가치세 금액 입력 시 정부지분율에 따른 환입대상금액 자동 계산

홈 > 정산 > 정산준비 >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환입 메뉴

위탁과제 목록

상태	순번	사업년도	연차	INIS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합의예산 (원금)	합의예산 (환율)	정부 지분율	기관부담 지분율	그 외 지분율	연구비 기지급금액	부가세금액	반납대상금액 (정부지분액)
	1	2025	1					100,000,000	0	100	0	0	100,000,000		
	2	2026	2					100,000,000	0	100	0	0	0		
	3	2026	2					100,000,000	0	100	0	0	0		
합계								300,000,000	0				100,000,000		0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환입 처리는 전문기관마다 상이함

- (1) 부가가치세 환입분을 별도 반납으로 처리
  - (2) 부가가치세 환입처리 후 잔액으로 반납처리 등
- (전문기관 연구정산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 연구비 정산전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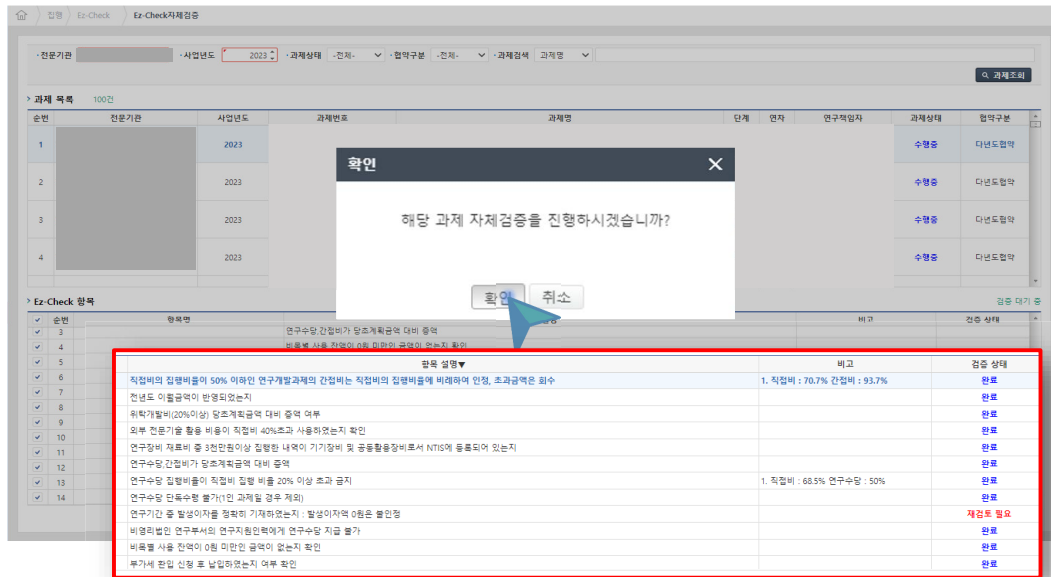
## ● 집행 ▶ Ez-Check ▶ Ez-Check 자체검증(1/4)

▶ Ez-check 항목 \*Ez-check 항목은 전문기관별로 상이함

연번	항목구분	세부 항목
1	연구비 집행내역	전년도 이월금 반영 여부
2	연구비 집행내역	위탁비 20% 이상 당초 연구개발비 대비 증액 여부
3	연구비 집행내역	연구수당, 간접비 당초 연구개발비 대비 증액 여부
4	연구비 집행내역	비목별 사용 잔액이 0원 미만인 금액이 있는지 여부
5	연구비 집행내역	연구시설장비비 3천만원 이상 집행한 내역있을 때 장비정보가 NTIS 등록 여부
6	연구비 집행내역	기관부담금 납부기한 내 입금 여부
7	연구비 집행내역	과세 과제의 부가세 환입 처리 여부
8	연구비 집행내역	외부 전문기술 활용 비용이 직접비 40% 초과 사용했는지 여부
9	연구비 집행내역	연구재료비 검수일자, 검수자 등록여부 확인
10	연구비 집행내역	연구시설장비비 검수일자, 검수자 등록여부 확인
11	연구비 집행내역	연구활동비 검수일자, 검수자 등록여부 확인
12	발생이자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용도 등록 여부
13	연구수당	연구수당 단독수령 여부(참여연구원 1인인 경우 제외)
14	연구수당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20% 이상 초과 금지
15	연구수당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을 계상액의 70% 초과 여부(참여연구원 1인인 경우 제외)
16	연구수당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수당 지급 여부
17	간접비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 ● 집행 ▶ Ez-Check ▶ Ez-Check자체검증(2/4)

### ▶ 정산전 과제(수행중, 과제종료) 자체 검증



- \*단계 종료 대상과제의 경우 단계내 과제가 모든 항목에서 검증 완료 필요 ▶ 검증 실패 시 정산 진행 불가
- \*단계 내 사용실적보고 대상 과제에서 Ez-Check 항목별 검증 가능
- \*Ez-Check 검증제외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문의 필요

## ● 집행 ▶ Ez-Check ▶ Ez-Check자체검증(3/4)

### ▶ Ez-check 항목별 확인메뉴(1/2)

연번	세부항목	확인메뉴
1	전년도 이월금 반영 여부	정산 > 사용실적보고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전년도 이월금 반영 여부	집행 > 집행내역등록완료 > 집행내역완료
2, 3	위탁비 20%이상 당초 연구개발비 대비 증액 여부 연구수당, 간접비 당초 연구개발비 대비 증액 여부	협약 > 연구계획변경 > 수정예산정보 변경 집행 > 연구비 사용 현황 > 예산실적대비표 - 단계내과제보기
6	기관부담금 납부기한 내 입금 여부	마이페이지 > 기관부담금 납부 현황
7	과세 과제의 부가세 환입 처리 여부	집행 > 취소/환입 > 부가세 환입/환입취소
4~5, 8~11	비목별 사용 잔액이 0원 미만인 금액이 있는지 여부 연구시설장비비 3천만원이상 집행한 내역있을 때 장비정보가 NTIS 등록 여부 외부 전문기술 활용 비용이 직접비 40% 초과 사용했는지 여부 연구재료비 검수일자, 검수자 등록여부 확인 연구시설장비비 검수일자, 검수자 등록여부 확인 연구활동비 검수일자, 검수자 등록여부 확인	집행 > 연구비 사용 현황 > 사용내역 조회

## ● 집행 ▶ Ez-Check ▶ Ez-Check자체검증(4/4)

### ▶ Ez-check 항목별 확인메뉴(2/2)

연번	세부항목	확인메뉴
12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용도 등록 여부	협약/집행/정산 > 연구비관리/집행내역등록완료/정산준비 > 이자 관리 정산 > 사용실적보고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 단계내보기
13~16	연구수당 단독수령 여부 (참여연구원 1인인 경우 제외)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20% 이상 초과 금지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을 계상액의 70% 초과 여부(참여연구원 1인인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수당 지급 여부	집행 > 연구비 사용 현황 > 사용내역 조회
17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집행 > 연구비 사용 현황 > 사용내역 조회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 연구개발비 사용의 상시점검

- ▶ 단계 정산 실시 전 통합Ezbaro를 이용하여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또는 전문기관에서 연구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용내역이나 연구비 오사용 건에 대한 보완 요청

#### <혁신법 매뉴얼 p.247 페이지 참조>

#### 바. 연구개발비 사용의 상시점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 상시점검 보완절차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 상시점검 보완진행상태

보완진행상태	설명
점검전	위탁회계법인에서 집행내역 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
점검중	위탁회계법인에서 집행내역을 점검 중인 상태
보완요청	위탁회계법인에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미흡으로 점검의견 및 점검의견상세 입력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보완 요청을 진행한 상태
보완중	연구개발기관에서 보완요청에 대해 보완 진행중인 상태
보완완료	연구개발기관이 보완한 집행내역에 대해 점검 요청한 상태
점검완료	위탁회계법인이 집행내역 점검 종료한 상태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정산 ▶ 상시점검 ▶ 상시점검 보완(1/3)

> [기관(대표)관리자, 실무담당자] 상시점검 보고서 조회 및 집행내역 보완

단계	연차	과제종료상태	연구시작일자	연구종료일자	다년도연구시작일자	다년도연구종료일자	점검여부	보고서이력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총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완진행상태	집행건수	보완요청건수	보완완료건수
1	1	과제종료(당해)	2023-01-01	2023-11-30	2023-01-01	2023-11-30	미점검	이력보기	한국기일_2 (054947)	박대표	100,000,000	248,400	99,751,600	보완중	1	0	0
1	1	과제종료(당해)	2023-01-01	2023-09-30	2023-01-01	2023-09-30	미점검	이력보기	한국기일_1 (054946)	신대표	710,000,000	1,230,010	708,769,990	점검중	7	1	0
1	1	과제종료(당해)	2023-01-01	2023-09-30	2023-01-01	2023-09-30	미점검	이력보기	한국기일_1 (054946)	신대표	710,000,000	0	710,000,000	점검전	0	0	0

- \* 전문기관별 상시점검 보고서 생성주기 상이
- \* 보완 요청내역 조회 전 상시점검 보고서 생성대상 여부값 확인 필요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정산 ▶ 상시점검 ▶ 상시점검 보완(2/3)

> [연구개발기관] 상시점검 보고서 점검이력 및 점검상태, 진행상태 확인

점검일자	점검상태	점검의견	점검의견상세	점검담당자	보완의견	보완일자	보완담당자	최종수정일자	증빙	증빙자료	점검이력
2023-11-13	미흡	증빙서류 미비		사용자056	증빙서류 보완	2023-11-13	신대표	2023-11-13	없음	증빙(1건 등)	0력

순번	이력작성일시	점검의견	점검상태	진행상태
1	2023-11-13 22:12:59	증빙서류 미비	미흡	검토중
2	2023-11-13 22:12:59	증빙서류 미비	미흡	검토중
3	2023-11-13 22:13:08	증빙서류 미비	미흡	검토중
4	2023-11-13 22:13:13	증빙서류 미비	미흡	보완요청
5	2023-11-13 22:14:56	증빙서류 미비	미흡	보완중

- \* [목록] 클릭 시 이전 조회 정보 저장됨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전)

● 정산 ▶ 상시점검 ▶ 상시점검 보완(3/3)

▶ [연구개발기관] 보완 완료 기준 : 저장 후 확인요청 진행

순번	결의확인번호	결의제목	결의일자	상태	비(세목)	사용용도	집행방법	공급금액	부가세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부가세	연구비이
1			2023-07-06	집행완료	연구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등우	계약이체	232,400	16,000	2023-07-06	248,400	16,000	

**<주의사항>**  
**상시점검, Ezcheck 자체검증과 본정산의 집행내역 검토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체검증 통과 ≠ 불인정 건 없음**

# 03 통합Ezbaro 사용법 - 정산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단계 정산 절차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정산준비 ▶ 이월금 신청

› (IRIS) 이월금 신청/승인 처리, (통합Ezbaro) **IRIS 이월금 신청/승인내역조회**

› 차년도 과제로 단계 이월금 반영시점 : 사용실적보고서 최종 제출 이후

\* (IRIS)정산 취소 시 이월금도 반려 후 재신청 필요

**\* (통합Ezbaro)IRIS에서 이월금 신청 이후 전문기관 검토완료(승인/반려) 후 승인내역 조회가능**

> 이월금 내역 (신청내역조회)

※ 전년도과제, 최종실적과제는 이월금 신청 대상과제가 아니므로 사용 잔액이 있을경우 사용실적보고 작성시 반납액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액상금액(현금)은 이월금 미포함입니다.

비목	세목	전년도이월금(현금)	전년도이월금(현물)	액상금액(현금)	액상상실이자	합계(현금)	합계(현물)	사용잔액	이월가능금액	이월반납액	이월금 신청금액	액상반납금액	이월신청 사유	이월승인금액
특입비	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특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특혜/특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연구시설·장비	0	0	0	0	0	0	0	0	0	0	0		0
	특혜/연구시설·장비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활동비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유류비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수당	0	0	0	0	0	0	0	0	0	0	0		0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0
	국립중앙연구원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개발특별비	0	0	0	0	0	0	0	0	0	0	0		0	
스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 이월금 처리내역

이월 신청금액 | 이월 승인 금액 | 액상 반납 금액

이월신청사유 | 전문기관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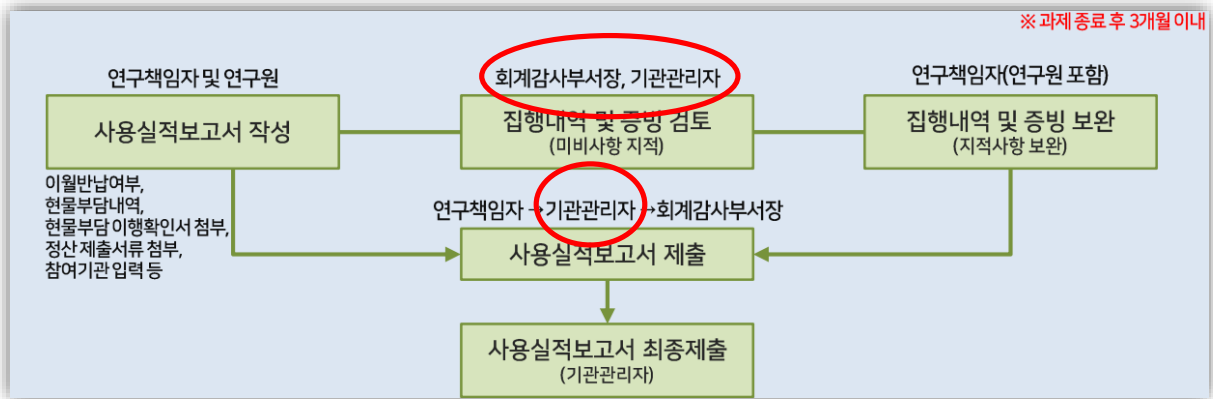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단계 정산 절차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사용실적보고 프로세스



## ● 사용실적보고 ▶ 보고서 현황 상세

> 과제구성도(주관/공통/위탁) 내 과제들의 사용실적보고 제출 현황 조회

< 연구수행기관 정산 신청 절차 >

이월금 산정상태	집행 마감	사용실적 보고 진행상태	사용실적보고 제출일자	상위기관 제출	검토결과 확인	정산 보고서	상위기관 제출 반려
-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승인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승인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승인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승인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승인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승인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승인	집행마감	작성전		정산전	확인전	-	대상이님

## ● 사용실적보고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과제상세정보, 연구비 사용실적 내역, 현물 부담 내역, 참여연구원 목록, 참여연구원 연월 인건비 계상률, 이자 내역 확인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Ezbaro system interface for project management. It includes several key sections:

- 과제상세정보 (Project Details):** A form showing project name, year (2023), and various administrative details.
- 과제상세정보 (Financial Summary):** A table showing financial data for 2023, 2024, and 2025, including budget and actual usage.
- 현물부담확인서 첨부 (Material Burden Confirmation Attachment):** A section for uploading confirmation documents.
- 정산 제출서류 첨부 내부규정 등 (Settlement Submission Documents Internal Regulations, etc.):** A list of documents to be attached, such as '세부비목별내역서.pdf' and '사용실적보고서.pdf'.
- 보고서 출력 (Report Printing):** A menu for generating reports, including '사용실적보고서(전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세부비목별 내역서', and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통합 Ezbaro 105

## ● 전년도 이월금액이 미반영된 경우?



- ▶ 메뉴 : 집행 ▶ 집행내역등록완료 ▶ 집행내역완료
- ▶ [연구개발기관] 차년도로 집행 잔액 자동 이월(전년도 및 차년도 과제 확인)

▶ 집행내역 (원목)

- 집행내역 등록 대상과제 : 다년도입력과제 중 단계 내 전자과제(단계 종료 대상과제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내역 등록 완료 전 잠정사항 : 불가세 환입 완료(입금 완료), 발송일자 등록 확인, 결의등록 후 미집행내역 집행처리(카드 미결의사항 제외 포함)
  - 집행내역 등록 완료 후 당해연도 연구비 사용이 불가(자년도 과제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결의등록 후 미집행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송일자 국고반납 산책 시 실제 반납은 단계종료 후 정산 완료시 반납함
- 집행내역 등록 완료 후 집행잔액의 차년도 과제의 해당 세목으로 자동 이월 됨(간발유형의 경우 자년도 과제의 계좌로 집행 잔액 자동이체 됨)

※ 예산금액(원금)은 이월금 미포함입니다.

비목	세목	전년도이월금 (원금)	전년도이월금 (현물)	예산금액			집행금액		사용잔액		이월금액	
				원금	예산상일이자	합계(원금)	현물	현금	현물	원금	현물	원금
직접비	(특례)작성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0	0	0	0	0	0
	(특례)연구시설·장비비	0	0	0	0	0	0	0	0	0	0	0
	연구활동비	0	0	11,703,000	0	11,703,000	0	0	11,703,000	0	11,703,000	0
	연구차료비	0	0	203,849,000	0	203,849,000	0	0	203,849,000	0	203,849,000	0
	연구수당	0	0	5,473,000	0	5,473,000	0	0	5,473,000	0	5,473,000	0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	0	0	0	0	0	0	0	0	0	0
	연구개발부담비	0	0	0	0	0	0	0	0	0	0	0
	보안수당	0	0	821,000	0	821,000	0	0	821,000	0	821,000	0
	목적상간접비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249,213,000	0	249,213,000	0	0	249,213,000	0	249,213,000	0
간접비	간접비	0	0	13,781,000	0	13,781,000	0	0	13,781,000	0	13,781,000	0
	합계	0	0	262,994,000	0	262,994,000	0	0	262,994,000	0	262,994,000	0

- \* 차년도 과제가 시스템 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 이월 가능
- (차년도 과제 생성이 늦게 된 경우 차년도 과제에 이월금 미반영! 집행내역 등록 완료 취소 후 재진행)
- => 집행내역완료 취소 시 과제 집행 잔액을 기준으로 이월금 반영, 차년도에서 이월금 세목변경 필요
- => 취소 없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 통합Ezbaro 콜센터로 차년도 과제로 전년도 이월금 반영 요청 문의

통합 Ezbaro 106

## ● 사용실적보고 ▶ 집행내역 및 증빙 보완

- ▶ 사용실적보고 단계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 집행내역 보완
- ▶ 집행내역 보완 후 확인요청

\*집행내역 검토 및 보완 과정에서 집행마감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문의

## ● 사용실적보고 ▶ 회계감사의견서 및 보고서 최종제출(1/2)

-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연구기간 발생이자 사용용도 등에 따른 반납액 확인

▶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단계내과제보기

내역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사용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장부지분율(%) (현금사용비율)	반납액
	잔액	잔액					
전단계 이월액		0					
장부지분연구개발비		1,430,000,00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750,000	1,285,858,516	178,691,484	0	97.5	0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0					
단계 중 발생이자		0					
소계		1,465,750,000					
전단계 이월액		0					
장부지분연구개발비		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21,750,000	278,400,000	43,350,000	0	100(87.7)	0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0					
소계		321,750,000					
합계		1,465,750,000	1,285,858,516	178,691,484	0		0
현물		321,750,000	278,400,000	43,350,000	0		0
합계		1,787,500,000	1,564,258,516	222,041,484	0		0

▶ 연구기간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단계내과제보기      ▶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구분	발생금액	사용용도	사용금액	사용잔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처정 집행 금액		
					현금	장부지분율(%)	반납액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223,507	국고 반납	0	22	0	97.5	0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149,358	국고 반납	0	14	0	100	0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0		0
합계					0		0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현물 회수금액 계상기준 (현금사용비율에 따른 현물 회수금액 산정)

- 연구비 집행비용 계산 시 인정금액(현금)(24.12.)
- 연구비 집행비용 계산 시 사용금액(25.3.)

## ● 사용실적보고 ▶ 회계감사의견서 및 보고서 최종제출(2/2)

- ▶ 회계감사 검증 결과 확인
- ▶ 종합의견 작성

> 회계감사 검증 결과

비목	영목	부작성 집행내역	부작성 집행금액
직접비	인건비		0
	(일반)작성인건비		0
	(특제)작성인건비		0
	(일반)연구시설·장비비		0
	(특제)연구시설·장비비		0
	연구활동비		0
	연구재료비		0
	연구수당		0
	위탁연구개발비		0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
	연구개발부담비		0
보안수당		0	
합계	현금		0
	현물		0
	합계		0

> 종합의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회계감사 부서장 이은희

정산진행상태 변경사유

> 분할납부 여부 일시반납

정산진행상태 변경이력

정산 제출서류 | 보고서 출력 | 저장 | 회계감사부서장승인 | 최종제출 | 반려

\*최종제출은 회계감사의견서 및 보고서 최종제출 메뉴에서 가능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단계 정산 절차



## ● 연구비정산 ▶ 정산보고서 확인(1/3)

- ▶ 단계 예산, 집행금액 등 단계 정산 내역 확인
- ▶ **위탁정산기관 검토의견, 전문기관 보완요청의견 확인**

> 정산보고서 확인 과계구성도 단계내과계보기 위탁정산·정산완료(결과확정) (단위: 원)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정부의 출연금			
합계	전년도 이월액(원금전년도 이월액(원금	원금	현물	이자 산입액	합계	원금	현물	합계	원금	현물	합계	원금	현물		
(H = D+e+E+f+C)	(D)	(E = A+B+C)	(F = a+b+c)	(G)	(A1)	(A)	(a)	(B1)	(B)	(b)	(C1)	(C)	(c)		
12,500,000	0	12,500,000	0	0	12,500,000	12,500,000	0	0	0	0	0	0	0		
자본물						집행잔액			집행잔액			수익금			
정부지분물	민간지분물	정부외지분물	합계	원금	현물	세액	합계	원금	현물	발생 수익금	반납 수익금	사용예정 수익금			
(S1)	(S2)	(S3)	(J = I+J+K)	(I)	(J)	(K)	(N = L+M)	(L)	(M)	(E1)	(E2)	(E3)			
100	0	0	12,497,396	12,497,396	0	0	2,604	2,604	0	0	0	0	0		
이자						기간 외 발생이자			정산 검토 결과 (원금)						
기간 내 발생이자			반납이자			사용예정이자			불인정 금액			정산잔액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불인정 금액	정산잔액	자년도 이월액	최종잔액
(D1 = D2+D3)	(D2)	(D3)	(D4 = D5+D6)	(D5)	(D6)	(D7)	(D8 = D9+D10)	(D9)	(D10)	(O)	(P = L+D4+D8+E2+O)	(Q)	(R = P-Q)		
1,820	1,820	0	1,820	1,820	0	0	0	0	0	0	0	4,424	4,424		
정산검토 결과 (원물)						반납금액(정부출연금비율)			위탁과제의 부가세 환입분			최종반납금액			
불인정 금액	원물잔액	원물 최수액	사용잔액 반납금	불인정 반납금	이자 반납금	수익금 반납금	원금 최수액(정부출연금 지분)	위탁과제 정부지분물			실최수액				
(U)	(V)	(W = V+U)	(X1 = (L-Q)*S1)	(X2 = O*S1)	(X3 = D5+D9)	(X4 = E2*S1)	(X = X1+X2+X3+X4)	(X5)			(T = X+W+X5)				
0	0	0	2,604	0	1,820	0	4,424	0			4,424				

○ 연구개발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집행할

위탁정산기관 검토의견

전문기관 보완요청의견

## ● 연구비정산 ▶ 정산보고서 확인(2/3)

- ▶ 전문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정산보고서가 IRIS로 정보 전송됨
- ▶ 연구기관 입장에서 이체해 가야할 잔액, 추가 납부액 조회 가능

합계	전년도 이월액	원금	현물	이자 산입액	합계	원금	현물	합계	원금	현물	합계	원금	현물		
(S1)	(S2)	(S3)	(J = I+J+K)	(I)	(J)	(K)	(N = L+M)	(L)	(M)	(E1)	(E2)	(E3)			
96.6	3.4	0	631,905,152	514,905,572	113,999,580	3,000,000	25,094,848	25,094,428	420	0	0	0			
이자						기간 외 발생이자			정산 검토 결과 (원금)						
기간 내 발생이자			반납이자			사용예정이자			불인정 금액			정산잔액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불인정 금액	정산잔액	자년도 이월액	최종잔액
(D1 = D2+D3)	(D2)	(D3)	(D4 = D5+D6)	(D5)	(D6)	(D7)	(D8 = D9+D10)	(D9)	(D10)	(O)	(P = L+D4+D8+E2+O)	(Q)	(R = P-Q)		
685,704	662,390	23,314	685,704	662,390	23,314	0	111,161	107,381	3,780	0	25,891,293	0	25,891,293		
정산검토 결과 (원물)						반납금액(정부출연금비율)			위탁과제의 부가세 환입분			최종반납금액			
불인정 금액	원물잔액	원물 최수액	사용잔액 반납금	불인정 반납금	이자 반납금	수익금 반납금	원금 최수액(정부출연금 지분)	위탁과제 정부지분물			실최수액				
(U)	(V)	(W = V+U)	(X1 = (L-Q)*S1)	(X2 = O*S1)	(X3 = D5+D9)	(X4 = E2*S1)	(X = X1+X2+X3+X4)	(X5)			(T = X+W+X5)				
0	0	0	24,241,217	0	769,771	0	25,010,988	0			25,010,988				

연구비관리시스템 납부액
연구개발기관 추가 납부액
연구개발기관 잔액 지급액
최수액

위탁정산기관 검토의견

전문기관 보완요청의견

첨부파일

· 파일 등록시, 건당 최대 20MB에 최대 2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순번	파일	파일명	용량	PDF뷰어	비고

▶ 보고서 확정 및 IRIS전송

## ● 연구비정산 ▶ 정산보고서 확인(3/3)

▶ 정산확정 이후 정산회수금 정보 조회 가능

> 정산보고서 확인 | 단계구분도 | 단계내과제 | **위탁정산: 정산완료(결과확정)** (단위: 원)

당해년도 연구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정부의 출연금			
합계	전년도 이월액(원균전년도 이월액(원물	원금	원물	이자 산입액	합계	원금	원물	합계	원금	원물	합계	원금	원물		
(H = D+d+E+F+C)	(D)	(d)	(E = A+B+C)	(F = a+b+c)	(G)	(A)	(a)	(B)	(b)	(C)	(C)	(C)	(C)		
188,750,000	0	154,775,000	33,975,000	0	151,000,000	151,000,000	0	37,750,000	3,775,000	33,975,000	0	0	0		
지분금				집행금액				집행잔액				수익금			
정부지분금	민간지분금	정부외지분금	합계	원금	원물	세액	합계	원금	원물	발생 수익금	반납 수익금	사용예정 수익금			
(S1)	(S2)	(S3)	(J = I+J+K)	(I)	(J)	(K)	(N = L+M)	(L)	(M)	(E1)	(E2)	(E3)			
97.5	2.5	0	18,716,552	17,625,511	0	1,091,041	170,033,448	136,058,448	33,975,000	0	0	0			
정산 검토 결과 (원금)															
발생이자				기간 내 발생이자				기간 외 발생이자				정산 검토 결과 (원금)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사용예정이자	합계	정부	민간	불인정 금액	정산잔액	차년도 이월액	최종잔액		
(D1 - D2 - D3)	(D2)	(D3)	(D4 = D5+D6)	(D5)	(D6)	(D7)									
362,456	354,390	8,066	354,390	354,390	0										
정산검토 결과 (원물)				반납											
원물잔액	원물 회수액	사용잔액 반납금	불인정 반납금	이자 반											
(U)	(V)	(W = V+U)	(X1 = (L-Q)*S1)	(X2 = O*S1)	(X3 = D										
0	33,975,000	33,975,000	132,656,986	0											
연구비관리시스템 납부액	연구개발기간 추가 납부액	연구개발기간 잔액 지급액	회수금	정산금 정보											
133,011,376	33,975,000	3,401,462	166,986,376	상세보기											

**정산금 정보 상세보기**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월액(E)	발생이자 반납액(F)	수익금 반납액(G)	반납액(H=A-C+F+G-E)
	사용잔액	부처청집행금액	원물(A)	원물(B)				
18,716,552	136,058,448	33,975,000	0	0	0	354,390	0	136,412,838
구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수익금 등 반납액	위탁과제 부가세 감입 반납액(J)	총 반납액 P=(K+M+O+J)	
	원금	원물	원금	원물				
집행잔액(T)	136,058,448	33,975,000	170,033,448	354,390	수익금	0	0	
(사용잔액-이월금)	0	0	0	연구기간 후	기타	0	0	
부처청 집행금액	0	0	0	0	0	0	0	
소계(T)	136,058,448	33,975,000	170,033,448	354,390	소계(N)	0	0	
정부지분율(%)	(J)	97.5	100	정부지분율(%)	(J)	97.5	97.5	
정부지분액 K=(T*%)	132,656,986	33,975,000	166,631,986	354,390	O=(N*%)	0	0	

통합 Ezbaro 113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단계 정산 절차



통합 Ezbaro 114

## ● 연구비정산 ▶ 이의신청

- ▶ 상세 화면에서 불인정내역 조회
- ▶ 검토중/보완요청/보완중/보완완료/검토완료 건수 확인

\* (IRIS)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불용 처리 진행 → (통합Ezbaro) 이의신청 내역 조회 가능

## ● 연구비정산 ▶ 정산결과 확인

- ▶ 최종적인 단계 정산확정내역 및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조회 가능

# 통합Ezbaro 사용법(정산)

## ● 단계 정산 절차



## ● 연구비반납 ▶ 반납 결과/상세

- ▶ 사용잔액, 부적정집행, 발생이자 등 정산회수금 및 연구비 집행잔액 조회
- ▶ (IRIS) 반납내역 및 반납 가상계좌 확인

\*IRIS에서 연구비 반납 진행하는 과정은 IRIS 시스템을 통해 반납계좌정보 조회 가능

> 연구비 반납내역 2 건 / 2 건

연도	당해년도 총예산	집행액	사용잔액반납액 (A)	부적정집행반납액 (B)	정산잔액 (C+D)	정부지분율(%)	위탁과제부가세 환입반납액	정부지원금반납액	수행기관 반납대상액
과	150,000,000	150,000,000	0	0	0	100	0	0	0
실	200,000,000	199,999,514	486	486	486	100	0	486	486

**알림**

해당 과정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정산 연계 과제입니다. IRIS에서 정산회수금 반납 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확인

# IRIS 시스템을 통해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 > 메뉴 : 정산보고서(통합) > 정산진행현황

~ 

 ~

순번	연분기관	사업년도	과제번호	IRIS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종단일자	입행마감일자	정산마감일자	정산상황	정산진행상태	연식내용내역 보고일자	IRIS 정산연계	이월금 승인	사용실적 보고서	사용 비율
1						-	2027-03-31	2027-03-31	일반정산	일정액연료	2026-03-25	-	미신청	대상아님	
2						-	2027-03-31	2027-03-31	일반정산	일정액연료	2026-02-24	-	미신청	대상아님	
3						-	2026-03-31	2026-03-31	일반정산	정산완료(결과제출)		연계완료	미신청	제출완료	20%
4						-	2026-03-31	2026-03-31	일반정산	과제종료		-	미신청	미제출	
5						-	2026-03-31	2026-03-31	일반정산	정산완료(결과제출)		연계완료	미신청	제출완료	20%
6						-	2026-03-31	2026-03-31	일반정산	정산신청(전문기관제출)		연계전	미신청	제출완료	20%
7						-	2026-03-31	2026-03-31	일반정산	정산신청(전문기관제출)		연계전	미신청	제출완료	20%

\*IRIS 정산연계 - 연계완료인 경우만 IRIS 통해 반납처리

# 연구비 반납 ▶ 수행기관 이체

## > [기관 (대표) 관리자] 연구비 사용잔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체 실행

~

No	연분기관	사업년도	과제번호	과제명	단계	연차	연구책임자	연구시작일자	연구종료일자	당해년도 용역상 잔액	인납구분	이체대상금액	발생일자	잔액비율

- \*연구개발기관에서 이체해야하는 정산금액(기관부담금 지분액 등)
- \*정산확정된 이후 이체 처리 가능(이전까지는 정부외 지분에 대한 연구비 잔액 이체처리 불가)

# 05 Q&A 및 교육채널 안내



**통합 EZbaro**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EZbaro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통합EZbaro

감사합니다.